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단속 및 처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의 위기



2024년 10월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단속 및 처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의 위기

### 목 차

|          |                                  |      |
|----------|----------------------------------|------|
| <b>1</b> | <b>조사 배경 및 목적</b>                | 007p |
| <b>2</b> | <b>조사 방법 및 의의</b>                | 009p |
| <b>3</b> | <b>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b>               | 012p |
| <b>4</b> | <b>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교육 실태</b>       | 014p |
|          |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교육 여부               |      |
|          | 2) 교육의 방식과 내용                    |      |
|          | 3)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            |      |
| <b>5</b> | <b>반동사상문화배격법 단속 및 처벌 실태</b>      | 020p |
|          | 1) 단속 피해 목격 현황                   |      |
|          | 2) 단속 진행 기관 및 현황                 |      |
|          | 3) 단속 후 체포 현황                    |      |
|          | (1) 법적절차 이행 1- 체포 사유 및 권리 고지     |      |
|          | (2) 법적절차 이행 2- 체포 사실 통지 여부       |      |
|          | (3) 법적절차 이행 3- 체포 후 조사 및 예상기간 준수 |      |
|          | (4) 법적절차 이행 4- 변호사의 조력 여부        |      |
| <b>6</b> | <b>북한 주민들의 위기 - 법 인식 미비</b>      | 044p |
| <b>7</b> | <b>제언</b>                        | 047p |

## 그림 목차

- [그림 1] 조사 대상자 성별 분포 [전체 100명]
- [그림 2] 조사 대상자 연령별 분포 [전체 100명]
- [그림 3] 조사 대상자 거주 지역별 분포 [전체 100명]
- [그림 4] 연령별 법적 변화 인지 여부 [전체 100명]
- [그림 5] 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 규정 변화 인지 [전체 100명]
- [그림 6] 단속 경험 및 목격 수준 [혼합]
- [그림 7] 지역에 따른 단속 목격 횟수 [전체 100명]
- [그림 8] 지역에 따른 시기별 단속 횟수 [복수응답]
- [그림 9] 연도별 단속 비율 [경험]
- [그림 10] 단속 기관 비율 [경험]
- [그림 11] 체포에 대한 설명 유무 [경험]
- [그림 12] 지역에 따른 가족 고지 여부 [목격]
- [그림 13] 체포 사실 통지 여부 [경험]
- [그림 14] 체포 후 조사 시설 [경험, 복수응답]
- [그림 15] 체포 후 조사 시설 [목격, 복수응답]
- [그림 16] 지역별 조사 소요 기간 [경험]
- [그림 17] 지역별 조사 소요 기간 [목격, 복수응답]
- [그림 18] 체포 후 구류 여부 [경험]
- [그림 19] 지역별 예심 여부 [목격, 복수응답]
- [그림 20] 지역에 따른 예심 기간 [목격]
- [그림 21] 조사 과정에서 법적 도움 제공에 대한 설명 여부 [경험]
- [그림 22] 성별에 따른 최종 처벌 수준 [경험]
- [그림 23] 보호 조치 가능 여부 [경험]
- [그림 24] 지역에 따른 보호 조치 가능 여부 [목격]

## 표 목차

- [표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처벌 사유와 처벌 수준
- [표 2] 성별에 따른 법 인지 유무 [전체 100명]
- [표 3] 지역에 따른 법 인지 유무 [전체 100명]
- [표 4] 연령에 따른 시기별 단속 [경험]
- [표 5] 지역에 따른 시기별 단속 [경험]
- [표 6] 단속 장소 비율 [경험]
- [표 7] 단속 후 체포 여부 [경험]
- [표 8] 연령별 단속 후 체포 여부 [경험]
- [표 9] 지역에 따른 체포 여부 [목적]
- [표 10] 지역에 따른 최종 처벌 [목적, 복수응답]
- [표 11] 지역에 따른 단속 적용 법령 [목적, 복수응답]
- [표 12] 지역에 따른 재판 유무 [목적, 복수응답]
- [표 13] 지역에 따른 재판 변호인 조력 여부 [목적]
- [표 14] 처벌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목적, 복수응답]
- [표 15] 법 조항에 대한 인지 여부 [복수응답]
- [표 16] 조사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
- [표 17] 재판 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
- [표 18] 연령별 신소 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

## 참조문헌

설문지 [일반]



## 1

## 조사 배경 및 목적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4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sup>1</sup> 제정을 통해 북한으로의 외부 문화 유입과 북한 주민들의 외부 문화 향유에 대한 강한 법적 처벌을 대내외에 공식화 하였다. 코로나 비상 방역 상황 하에서도 2021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sup>2</sup>, 2023년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연달아 제정하면서 생존권 보장의무를 다해야 할 북한 당국이 위기를 틈타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은 외부 세계의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sup>3</sup>

이 가운데 북한 내부의 상황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김정은 집권기 들어 새로운 국가 정책 재편으로 북한 주민의 일상성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예측된다. 국가 주도의 검열과 통제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명은 ‘인권’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 및 NGO, 국제기구 등의 조사 결과가 있지만, 연속성과 종합적 데이터로서의 기능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에 대한 분석의 수준은 사회 내부의 변화상을 미처 쫓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 또한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데이터 한계를 보완하는 가치가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어와 사상 통제, 외부문화 접촉의 기회를 전면 차단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적용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북한 내부 조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실상을 조명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그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 하다. 본 조사는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4일 제정된 후 2022년 8월 19일 개정됨.

2 북한의 청년들은 자신의 생존과 삶의 진로를 국가에 의탁했던 기성세대와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복종에 그치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7.

3 장슬기, Daily NK, ‘서민갑부’ ‘골목식당’ 등 南예능 시청·유통한 고위간부 딸 공개총살, 2022년 2월 25일, <https://www.dailynk.com/20220225-4/>

동사상문화배격법의 단속 및 처벌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해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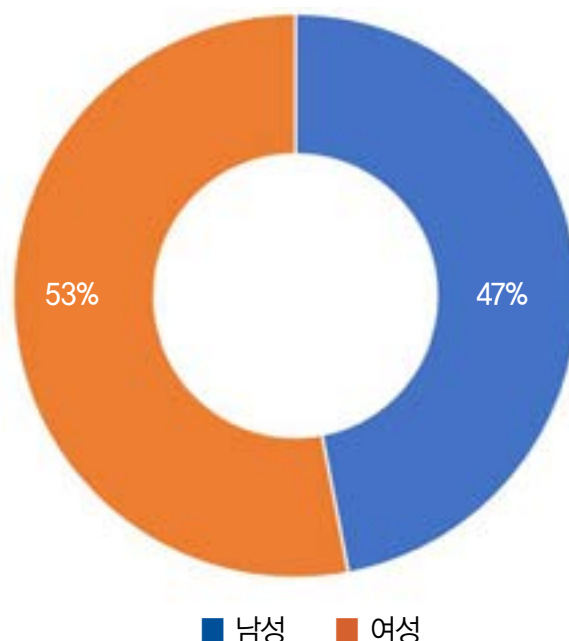
## 조사 방법 및 의의

본 조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중심으로 이 법이 북한 내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북한 내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북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된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북한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조사하며 실제 북한 내부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내재적 접근을 지도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총 100명이다. 조사 방식은 핵심 정보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응답자 집단으로 시작하여, 이 응답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방식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양적 결과로 도출되는 결과 값을 보충하고자, 실제 법을 집행하거나 주민들을 통제하는 간부 5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조사 설계는 연구원의 기초 설문지에 대해 외부 자문을 2회, 연구 보고서 초안에 대해 전문가 2인의 감수를 받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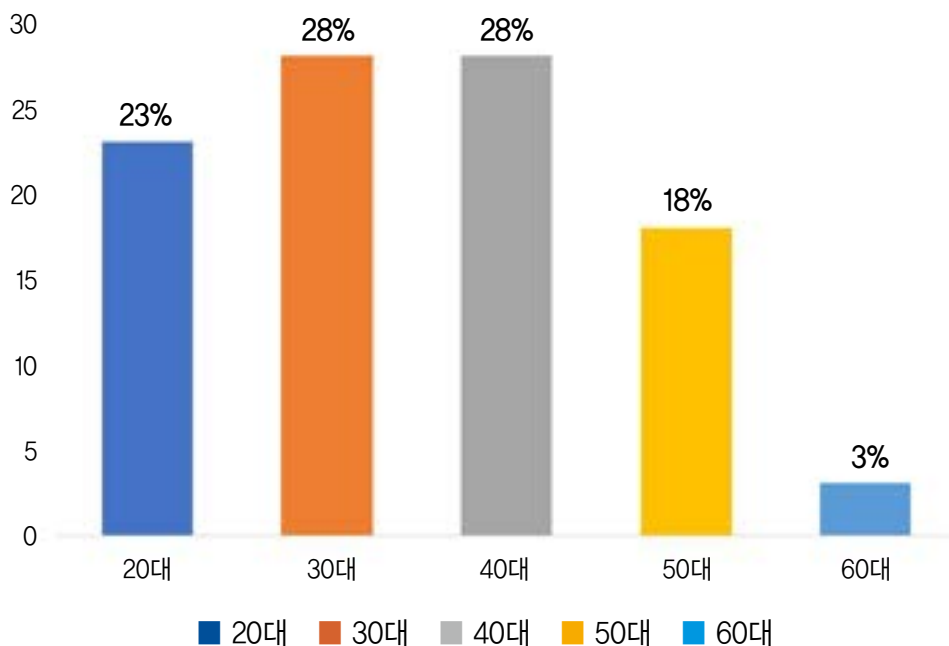
[그림 1] 조사 대상자 성별 분포 (전체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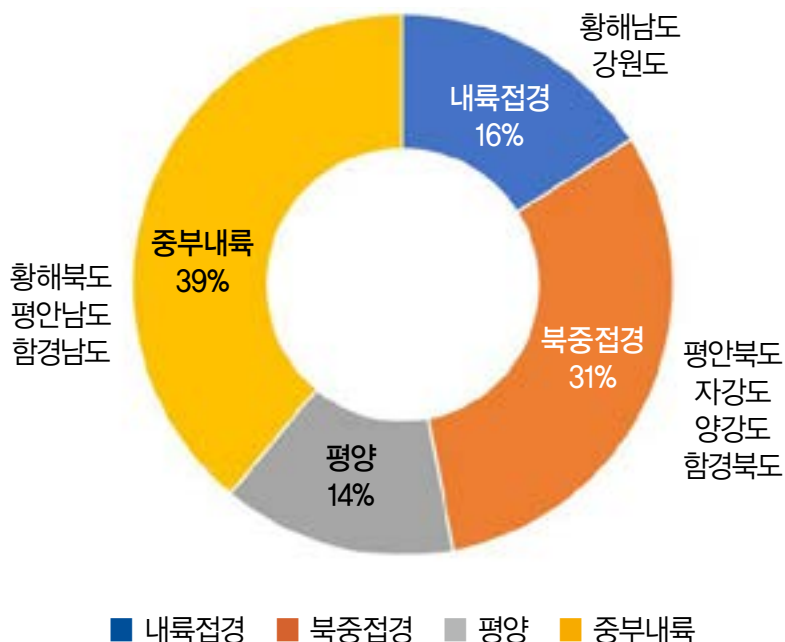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는 전체 100명 중 남성이 47%(47명), 여성이 53%(53명)로 이루어졌다. 통상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실태 조사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 편중성을 탈피한 결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연령별 분포는 총 100명 중 20대가 23%, 30대가 28%, 40대가 28%, 50대가 18%, 60대가 3%을 이루며, 연령별 고른 분포도를 보인다. 특히,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적용을 엄격히 받는 20, 30대의 답변 비율이 50% 넘게 차지하고 있어 법적 피해 실태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조사 대상자 연령별 분포 (전체 100명)



[그림 3] 조사 대상자 거주 지역별 분포 (전체 100명)



지역별로는 인구 밀도를 참조하여 인원을 배분하였고, 각 지역 도청 소재지 주민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지역을 내륙(황해남도, 강원도), 접경(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평양, 그리고 중부(황해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속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5명의 법 기관, 당 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보안상 재직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3

##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내 외부문화유입을 차단하고자 2020년 12월에 제정된 법으로 TV, 라디오 통로를 비롯하여 메모리, 도서 및 출판물, 손전화기를 통한 외부의 문화 및 콘텐츠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진 주민들이 한국의 말투나 옷차림을 따라하는 것도 반동행위로 간주하며 부모의 가정교양 책임까지 명시되어 있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보통 형사책임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의 경우 특별법인 사회통제법규(예를 들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를 통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에 대한 구체적 규정(사형까지 가능)을 두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외부정보통제 관련 규정은 형법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제184조(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제185조(적대방송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표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처벌 사유와 처벌 수준

|        | 처벌 사유                               | 처벌                   |
|--------|-------------------------------------|----------------------|
| 형사처벌   | 괴뢰사상문화전파죄(제27조)                     | 최고 무기로동교화형           |
|        | 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제28조)                   | 최고 사형                |
|        | 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제29조)              | 최고 사형                |
|        | 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제30조)                  | 최고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        | 불순문화전파죄(제31조)                       | 최고 3년 이상 5년 이하 로동교화형 |
|        | 괴뢰문화재현죄(제32조)                       | 최고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
|        | 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제33조)              | 최고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
|        | 불신고죄(제34조)                          | 로동단련형                |
|        |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제35조)                  | 벌금형                  |
|        |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제38조)         | 벌금형                  |
|        | 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제40조)          | 몰수                   |
| 행정적 처벌 |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제35조)                  | 로동교양                 |
|        | 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제36조)                  |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    |
|        |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엄중한 행위(제39조) | 중지 또는 폐업             |

류포죄) 3개 조항에 불과했으며 처벌 또한 노동교화형이 최고형이었다. 그러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통해 제27~제40조에 걸쳐 14개의 처벌 조문을 두고 있으며, 처벌규정의 경우 8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고, 교환하는 등의 전반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적게는 벌금형부터 최대 사형까지의 처벌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의 자유권규약 제6조(생명권 침해)는 물론 자유권규약 제18조(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제19조(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침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법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법상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 그리고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가장 중한 범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보고서에서 반역, 정치범죄 등은 ‘가장 중한 범죄’가 아니므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6조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29조는 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는 ‘가장 중한 범죄’의 종류에 속하지도 않는 범죄이며, 제28조 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는 북한 법 상 반역죄로 간주하더라도 자유권규약 제6조 생명권(특히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제2항)의 위반이다.

또한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의도 내지 북한 사회주의 사상 수호라는 목적 하에 이러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자칫 추상적이거나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불명확(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지점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집행에 있어 자유권규약 제9조 신체의 자유(특히 제2-5항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을 규정)에 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4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54-55.

## 4

##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교육 실태

먼저 본 조사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이행 정도를 점검하였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국가와 사회를 법보다는 당 조직에 의한 사상교양을 우선시 하여 통제·관리해왔다. 북한에서 법의 제정과 방침 하달은 동시에 교양 및 교육을 동반하며,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소속 조직을 통해 교양을 어떻게 받았는가는 법령 및 국가 통제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교육 여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교육을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2] 성별과 연령대에서 큰 차이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법 인지 유무 (전체 100명)

|    | 남성 | 여성 | 비율   |
|----|----|----|------|
| 있다 | 45 | 50 | 95%  |
| 없다 | 2  | 3  | 5%   |
| 합계 | 47 | 53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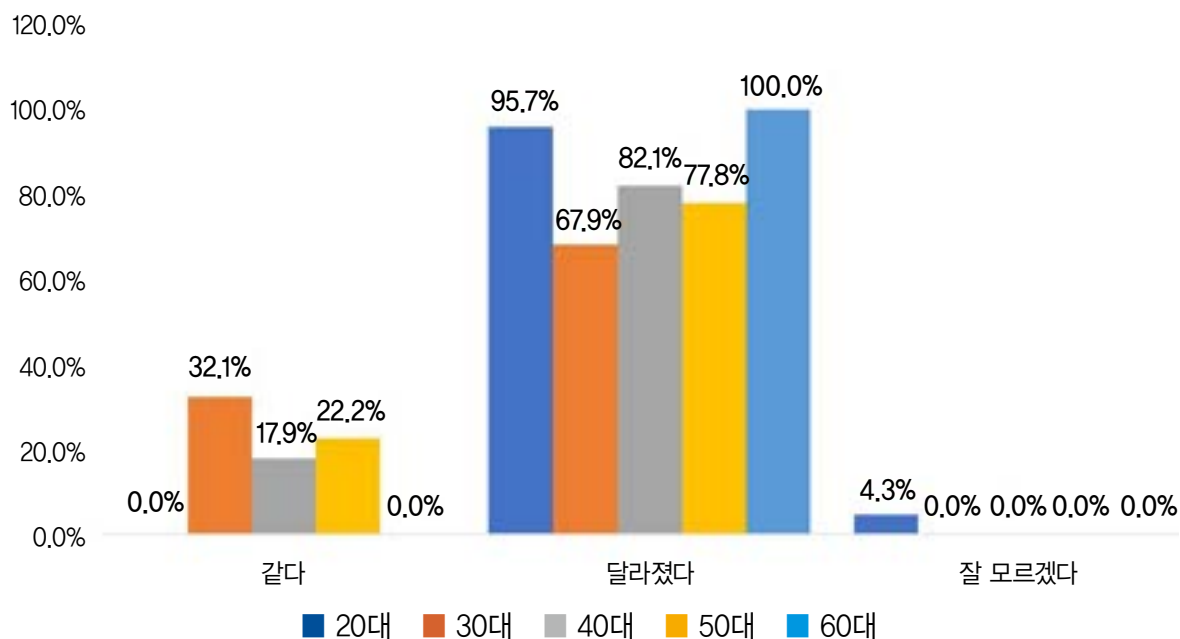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내륙접경 지역(내륙접경 87.5%, 중부내륙 92.3%)이 북중 접경지역(100%), 평양(100%)지역보다 다소 떨어진 비중으로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외부 문화 향유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북중 접경 지역과 수도 평양 중심의 통제가 법의 제정과 공포(公布)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지역에 따른 법 인지 유무 (전체 100명)

|    | 내륙접경 | 비율    | 북중접경 | 비율   | 평양 | 비율   | 중부내륙 | 비율    |
|----|------|-------|------|------|----|------|------|-------|
| 있다 | 14   | 87.5% | 31   | 100% | 14 | 100% | 36   | 92.3% |
| 없다 | 2    | 12.5% | 0    | 0%   | 0  | 0%   | 3    | 7.7%  |
| 합계 | 16   | 100%  | 31   | 100% | 14 | 100% | 39   | 100%  |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정 전과 후에 단속하는 법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응답자 100명 중 81%가 달라졌다고 하여 법의 변화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18%는 똑같다고 응답하였다. 1%(1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그림 4] 연령별 법적 변화 인지 여부 (전체 100명)



같은 질문에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주요 단속 대상이 된 20대의 응답자들은 95.7% 단속방법이 달라졌다고 응답하였고, 한국 드라마를 오랜 기간 시청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대는 67.9%만 달라졌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특이한 점은 40대 응답자가 무려 82.1%나 법령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 비율이 30대의 67.9%보다 월등히 높은 점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자녀 교양의 내용까지 법적 단속 및 처벌 규정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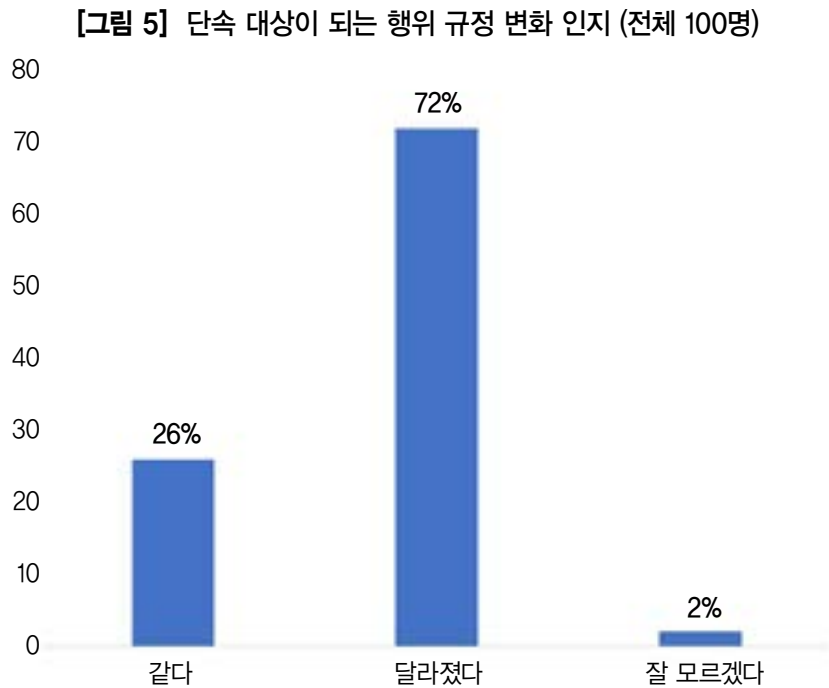
제26조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7조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중략)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만-20만원.

이로 인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청소년의 단속 강화와, 부모의 연대적 책벌이 법령에 명시된 점을 강조한 데 기인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0대와 달리 10대 자녀를 가진 40대<sup>6</sup>가 실질적으로 강도 높은 통제를 체감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단속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전체 72%의 응답자는 달라졌다고 응답하였고 26%는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 비율은 단속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5]



## 2) 교육의 방식과 내용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알게 된 통로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층 조직 단위를 통해 법령에 대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sup>6</sup> 예를 들면 인민반, 청년동맹, 직장에서 진행한 회의, 학습회, 강연회 등을 통해 법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강연회와 학습회 등 조직생활

<sup>5</sup> 심지어 최근에는 어머니가 직접 한국 드라마에 심취해 있던 딸을 신고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은설, Daily NK, “딸이 한국 영상물 봤다며 신고한 모친…주민들 ‘충격’”, 2024년 7월 31일, <https://www.dailynk.com/20240731-4/>

<sup>6</sup> 현재 북한식 사회주의 법치는 형성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의정,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2019년 1월, 『東北亞法制妍』 제12권 제3호, p.109.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이러한 강연과 학습을 통해서 사상주입은 물론, 최근 불거지는 문제들에 대해 당적, 국가적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인물은 대부분 초급당 비서<sup>7</sup>, 세포비서, 인민반장<sup>8</sup> 등 해당 단위의 당 조직 관련 인물이거나 인민 감시를 담당하는 경우였다. 지난 2021년 4월 6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조용원 당 조직비서는 보고를 통해 “당세포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끌어버리는 발원점이 되어 맹렬한 투쟁을 벌리며 도덕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sup>9</sup>

주된 강연 내용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왜 제정되었는지”(2024-HA-8, 2024-HA-12)에 대한 당위성과 “해당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2024-PY-3, 2024-SI-6, 2024-J-4, 2024-J-6)는 내용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강연의 주요 목적은 주민들에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도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목적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Daily NK가 입수한 ‘새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요구’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북한 당국은 법 제정(2020년 12월)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27조부터 38조에 이르는 내용을 추출해 강연자료로 활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강연을 통해 양형 기준을 제공하여,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외부 녹화물 통제에 관한 강연 내용은 확실히 법령 제정 전과 달라졌다. 응답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자녀 교양에 대한 내용”(2024-S-3, 2024-PY-10, 2024-SI-1)이 강조된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20대 청년층 사이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외부 매체를 보는 유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sup>11</sup> 청년층을 장악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연좌제를 강

7 2022년 2월 28일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는 김정은 집권기 들어서서 5년 2개월 만에 열린 바 있으며, 간부와 당원,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배영경 기자, 연합뉴스, “김정은, 당 기층간부들에 ‘인민헌신’ 강조…”<sup>7</sup> 2022년 4월 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1013151504>

8 인민반은 북한의 가장 작은 행정단위이며, 인민반장의 역할 중 하나는 소속반원 들을 감시하고 관계당국이 동향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혜란 기자, 연합뉴스, “북, ‘감시체계 말단’ 인민반장 우대법 제정…주민통제 강화 목적”, 2024년 4월 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8015500504>

9 김동하 기자, 조선일보, “북한, 세포비서대회 개막… 김정은 참석”, 2021년 4월 7일자,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4/07/2J5YWYE7T5A55IBNKSM3BIQALM/](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4/07/2J5YWYE7T5A55IBNKSM3BIQALM/)

10 장슬기, Daily NK, “[단독] “남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적개심 노골화”, 2021년 1월 15일, <https://www.dailynk.com/>

조한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지역 보위부의 보위원 또는 82연합지휘부<sup>12</sup>로 통칭되는 상무조직의 구성원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82연합지휘부의 경우, 2021년 6월 노동당 제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지위를 강화한 비상설 조직이다.<sup>13</sup> 보위부와 82연합지휘부에 의한 전달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해당 지역의 외부 문화 유입 정도에 따라 보위원 등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은 법제화를 통해 처벌의 법적 체계를 갖추고, 최말단 단위부터 중앙 당조직에 이르기까지 교양 및 통제를 강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

한편, 법령의 공포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 방침의 체계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공포함으로써 재직자들로 하여금 통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주를 전달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 기관 및 당 기관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교육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답변을 종합해보면 교육은 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교육 내용에 따르면, 이 법령은 ‘북한 정권을 옹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하며, 특히 이를 위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철저히 하라’는 방침이 내려온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2024-심층-3)

이러한 지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

11 특히, 이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는 교육과 정보화 환경의 발전을 통해 정보화 능력을 취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가를 긴장 시키는 대상이 되어 왔다. 조정아 외, 위의 책, p.8.

12 확보한 당 중앙위원회 지시문 일부를 보면, 제2항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중앙82연합지휘부는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울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채환, Daily NK, “北 반사·비사연합지휘부, ‘82연합지휘부’로 변경…상설 조직 전환?”, 2021년 11월 5일, <https://www.dailynk.com/北-반사·비사연합지휘부-82연합지휘부로-변경/>

13 배영경 기자, 연합뉴스, “북, ‘MZ세대 반사회주의’ 사상단속 법제화…가정교육까지 의무화”, 2022년 2월 5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3098800504>

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듯, 법령 제정-방침 수립-교육의 순대로 구체적 지침이 하달되는 구조 속에서 법 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관련된 실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는데, 해당 실무에는 위반자를 적발하는 방법이 포함되는데, 특히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단속 강화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2024-심층-5)

또한 북한은 2009년 11월, 2014년 4월, 2019년 5월 등 세 차례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응하면서, 형사사법 분야에 유의미한 권고를 수용한 바, 국제기준에 맞게 사법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수용한 바 있다.<sup>14</sup>

재직자들의 응답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법령의 목표가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의 차원이 아닐 뿐 더러 단속 절차를 준수할 것에 대한 지침은 없이 강력한 통제의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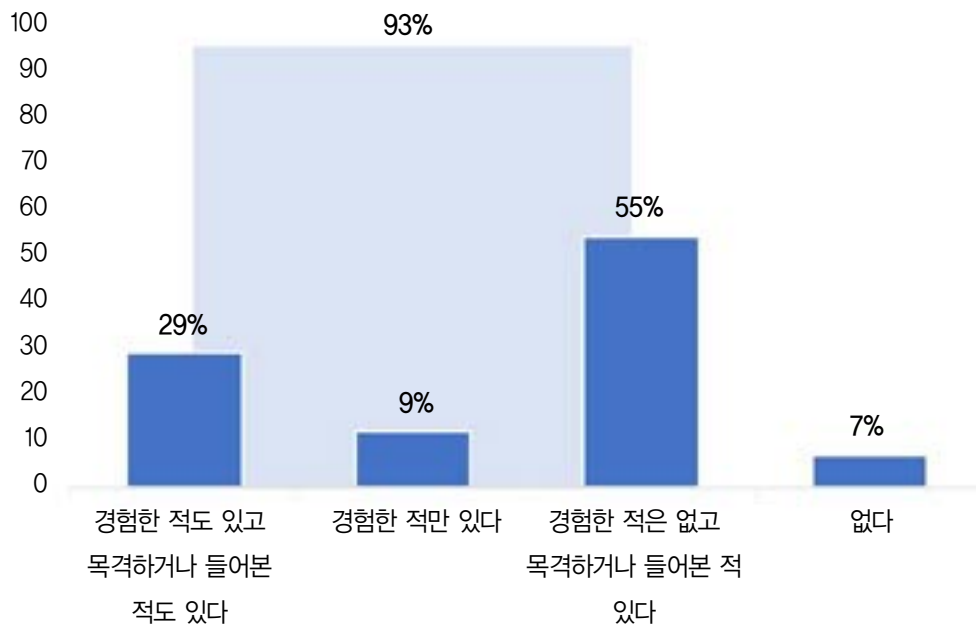
14 대한변호사협회, 『2022 북한인권백서』, p.28.

## 5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단속 및 처벌 실태

2020년 12월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단속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38명으로 연령, 성별,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직접 경험의 비중은 38%이나, 전체 응답자들이 목격한 북한 전지역에 걸쳐 발생한 목격 사건의 비중은 무려 93%에 달한다.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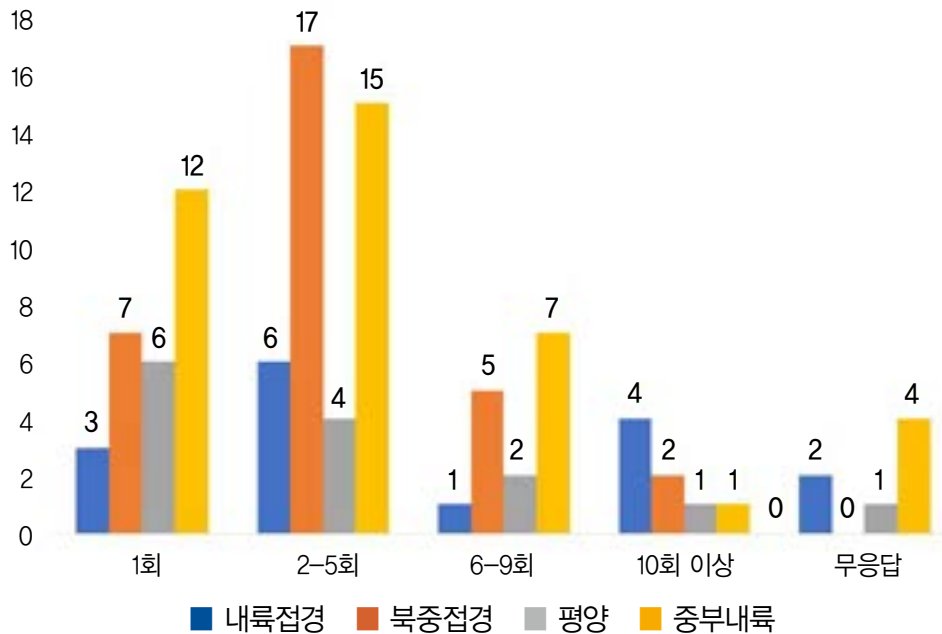
[그림 6] 단속 경험 및 목격 수준 (혼합)



## 1) 단속 피해 목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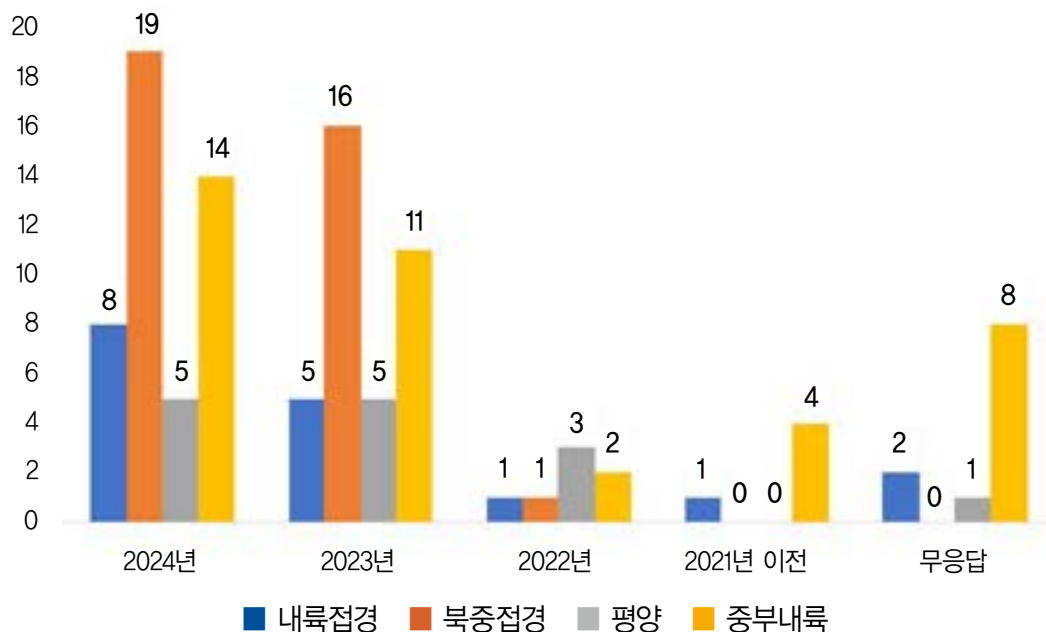
단속을 목격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총 93명(93%), 7명(7%)은 무응답하였다. 단속 목격자 93명은 대부분 1회에서 5회 정도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0회 이상 목격하였다고 한 응답자도 8명이었다. [그림 7]

[그림 7] 지역에 따른 단속 목격 횟수 (전체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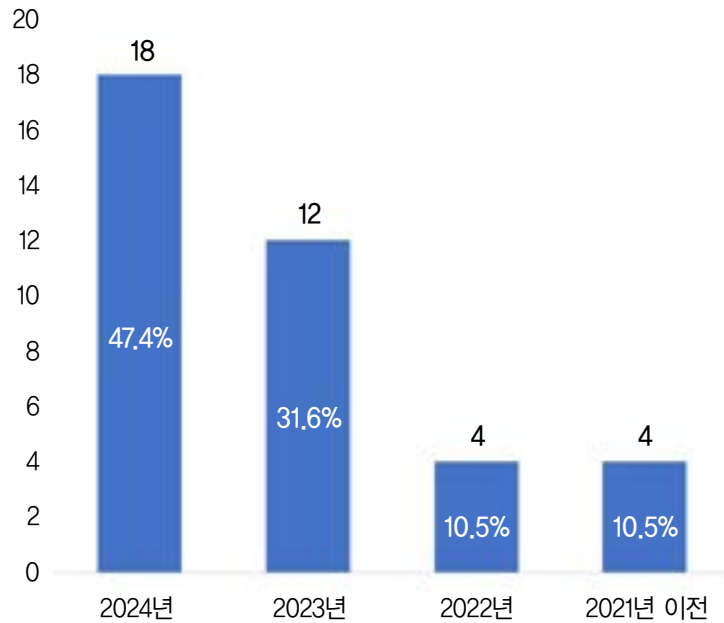
목격자 93명 중 83명이 2023년과 2024년에도 단속을 목격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중은 2021년 2022년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8]. 다시 말해, 코로나 종식 이후 최근 2년 들어 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한 점이 재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난다.

[그림 8] 지역에 따른 시기별 단속 횟수 (복수응답)



본인이 단속을 당해 본 적이 있는 38명 중 30명이 2023년과 2024년 단속을 [그림9] 당하였는데, 2024년에는 20대 [표4], 중부와 접경 지역에서 높은 체포 경험 [표5]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연도별 단속 비율 (경험)



[표 4] 연령에 따른 시기별 단속 (경험)

|          | 20대 | 비율    | 30대 | 비율    | 40대 | 비율    | 50대 | 비율    |
|----------|-----|-------|-----|-------|-----|-------|-----|-------|
| 2024년    | 7   | 77.8% | 3   | 27.3% | 3   | 37.5% | 5   | 50.0% |
| 2023년    | 1   | 11.1% | 6   | 54.5% | 2   | 25.0% | 3   | 30.0% |
| 2022년    | 0   | 0.0%  | 1   | 9.1%  | 2   | 25.0% | 1   | 10.0% |
| 2021년 이전 | 1   | 11.1% | 1   | 9.1%  | 1   | 12.5% | 1   | 10.0% |
| 합계       | 9   | 100%  | 11  | 100%  | 8   | 100%  | 10  | 100%  |

[표 5] 지역에 따른 시기별 단속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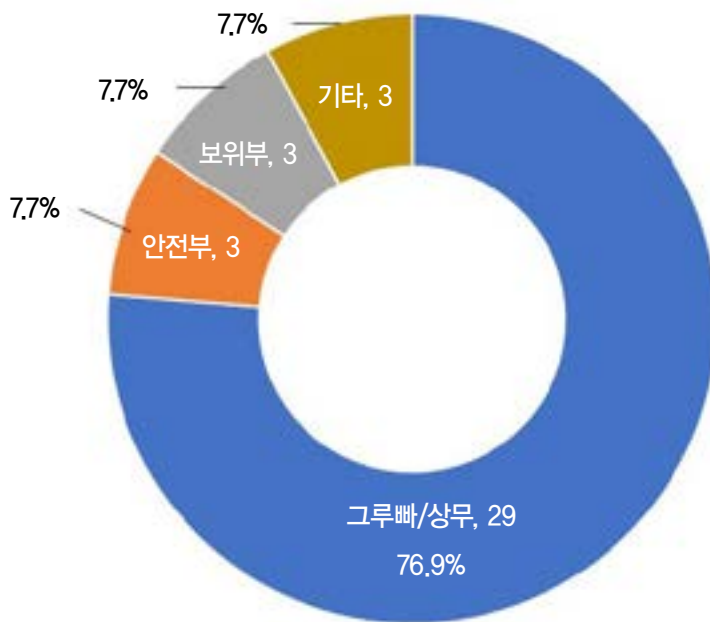
|          | 내륙접경 | 비율    | 북중접경 | 비율    | 평양 | 비율    | 중부내륙 | 비율    |
|----------|------|-------|------|-------|----|-------|------|-------|
| 2024년    | 2    | 33.3% | 5    | 50.0% | 0  | 0.0%  | 11   | 64.7% |
| 2023년    | 2    | 33.3% | 3    | 30.0% | 4  | 80.0% | 3    | 17.6% |
| 2022년    | 2    | 33.3% | 1    | 10.0% | 0  | 0.0%  | 1    | 5.9%  |
| 2021년 이전 | 0    | 0.0%  | 1    | 10.0% | 1  | 20.0% | 2    | 11.8% |
| 합계       | 6    | 99.9% | 10   | 100%  | 5  | 100%  | 17   | 100%  |

## 2) 단속 진행 기관 및 현황

이들의 단속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을 진행한 기관, 장소, 그리고 단속 및 체포, 조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보았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단속이 그루빠(76.9%)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청년동맹에 의해 단속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단속은 대부분 2-3명으로 이루어진 그루빠 또는 상무에 의해 진행되며 최대 8명까지 이루어진 그루빠가 있었다. [그림 10]<sup>15</sup>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보면 북한에서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에 의한 임의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법 기관, 당 기관 재직자들의 심층면담의 답변에서도 잘 나타난다. 단속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 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응답자도 단속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0] 단속 기관 비율 (경험)



심층 질문에서 재직자들은 총 8건의 참여 사례를 제공하였다. 통상 단속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불시단속을 진행하거나 주변 인물의 신고를 받고 체포된 경우가 있었다. 단독으로 단속을 진행하기 보다는 반사, 비사 그루빠를 이루어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 사이의 단속원이 함께 움직이

<sup>15</sup> 2021년 Daily NK 보도에 따르면 2021년 7월경 조직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비밀규찰대는 비밀리에 주민들의 발언, 행동을 모두 감시하고 보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되어 길거리에서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듣거나 청년들의 머리 모양과 노래와 춤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정서영, Daily NK,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근절 위한 여맹 ‘비밀규찰대’ 조직”, 2021년 7월 22일, <https://www.dailynk.com/>

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단속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군 부대 내에서의 단속이었다.

목격자 93명의 응답 결과를 보면, 단속 대상은 다양하게 나타난 가운데 학생들과 군인, 각 직군의 청년동맹원 등 젊은 층과 장사에 종사하는 40-50대 여성에 대한 단속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 결과에서도 단속 대상은 공장 또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젊은 종업원들, 20대 청년들, 군인 그리고 고급중학교 학생으로 최근에는 점점 젊은 청년층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루빠가 외부 매체 등을 단속하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 들어 특징적인 것은 단속을 하는 장소가 집과 길거리 등 임의적인 장소라는 점이다. 단속 피해 경험에 있는 38명의 단속 장소는 길거리(26.3%), 불시의 가택수색(44.7%)이 주를 이루었다.[표 6]<sup>17</sup>

[표 6] 단속 장소 비율 (경험)

|     | 응답자 수 | 비율    |
|-----|-------|-------|
| 길거리 | 10    | 26.3% |
| 집   | 17    | 44.7% |
| 직장  | 2     | 5.3%  |
| 기타  | 8     | 21.1% |
| 무응답 | 1     | 2.6%  |
| 합계  | 38    | 100%  |

목격자들의 경우에도, 주로 단속이 진행되는 장소는 집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sup>18</sup> 길거리가 13.5%, 그리고 기타로 대표되는 공공장소, 장마당 등이 32.7%로 나타났고, 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단속 당시 정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보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옷차림이 외국식이라는 이유

16 젊은 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현상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뿐만 아니라 2021년 9월 29일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함.

17 북한 헌법 제79조는 “국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2022 북한인권백서』, p.61.

18 일상적 공간이자, 내밀한 개인의 공간을 침해하는 권한이 임시 조직에게 부여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사적 공간은 빈번히 위협받고 있다. 2016년 경 김정은은 ‘영장 없이 가택수색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사회안전성에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코로나 위기이후 격상된 82연합 지휘부는 2인 1조로 가택 검열을 벌이는 권한을 재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 김채환 기자, Daily NK “김정은, 보안원에 ‘영장 없이 가택수색 말라’ 지시”, 2016년 12월 21일자, <https://www.dailynk.com/김정은-보안원에-영장-없이-가택수색/>

(2024-PY-6), 머리색이 노랗다는 이유(2024-PY-6), 대화를 남한식으로 했다(2024-HA-13)는 이유 등 근거가 주관적이고 모호한 것이 많았으며, 길을 걸어가면서 동무와 대화를 하다가 남한 노래를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단속을 당하는(2024-C-7) 등 주민들의 일상에서 그루빠 또는 단속원들이 깊숙이 침투하여 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손전화기를 검열한다던가 집에서 쉬는 동안 잠깐 한국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단속원이 말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던가 하는 등 불심검문이 만연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9</sup>

### 3) 단속 후 체포 현황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는 38명 중 체포로 이어진 사람은 13명으로 약 3분의 1의 단속 경험자가 체포까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은 단속된 사람 중 27.8%가 체포까지 이어진 반면 여성은 40.0%가 체포까지 이어져 체포된 사람의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에 대한 단속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북한 여성들에 대해 고강도의 단속 의지를 보여왔다. 장사와 유통업에 종사하는 북한 여성들이 외국산 손전화기 사용이나 내외부 정보 유출입에 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요주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다. 내외부 정보 유출입 또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특이점은 뇌물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가 남성이 44.4%, 여성이 30.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표기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인민보안 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20</sup>

<sup>19</sup> 이러한 일련의 노상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단속에 피하기 위해 소형 저장 매체를 선호하며, 자신만의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최근 미디어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20대 학생의 경우 길거리에서 “정 급하면 이렇게 작은 카드 있지 않습니까? SD 카드, 그거 바로 삼켜버려요.” F씨(남/20대/양강)’ (2024년 10월 8일 국민통일방송 세미나 자료집 중)

<sup>20</sup> 이채은 기자, DailyNK “여성 범죄와의 투쟁 강화” 강연회 진행…주민들 반응 ‘냉담’, 2024년 1월 11일자, <https://www.dailynk.com/20240111-2/>

【표 7】 단속 후 체포 여부 (경험)

|            |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
| 체포됨        | 5  | 27.8% | 8  | 40.0% |
| 체포되지 않음    | 5  | 27.8% | 6  | 30.0% |
| 뇌물을 주고 무마함 | 8  | 44.4% | 6  | 30.0% |
| 합계         | 18 | 100%  | 20 | 100%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는 20대와 50대가 각각 44.5%와 40%로 높게 나타났고, 30대의 경우 뇌물을 주고 무마한 비중도 54.5%로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30대(18.2%)는 주된 단속의 타겟이 되는 20대(44.5%)보다 체포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기도 하다. [표 8]

【표 8】 연령별 단속 후 체포 여부 (경험)

|            | 20대 | 비율    | 30대 | 비율    | 40대 | 비율    | 50대 | 비율    |
|------------|-----|-------|-----|-------|-----|-------|-----|-------|
| 체포됨        | 4   | 44.5% | 2   | 18.2% | 3   | 37.5% | 4   | 40.0% |
| 체포되지 않음    | 3   | 33.3% | 3   | 27.3% | 3   | 37.5% | 2   | 20.0% |
| 뇌물을 주고 무마함 | 2   | 22.2% | 6   | 54.5% | 2   | 25.0% | 4   | 40.0% |
| 합계         | 9   | 100%  | 11  | 100%  | 8   | 100%  | 10  | 100%  |

목적 사례 중에서도 단속된 대상의 체포여부는 98건 중 6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평양지역이 유일하게 체포된 사건보다 체포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았다. 이는 평양지역에는 고위간부 등 핵심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부유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단속될 경우 현장에서 뇌물 등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이 높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지역에 따른 체포 여부 (목적)

|            | 내륙접경 | 비율    | 북중접경 | 비율    | 평양 | 비율    | 중부내륙 | 비율    |
|------------|------|-------|------|-------|----|-------|------|-------|
| 체포됨        | 10   | 62.5% | 22   | 59.5% | 4  | 30.8% | 24   | 75.0% |
| 체포되지 않음    | 5    | 31.2% | 15   | 40.5% | 8  | 61.5% | 6    | 18.8% |
| 뇌물을 주고 무마함 | 1    | 6.3%  | 0    | 0.0%  | 1  | 7.7%  | 2    | 6.2%  |
| 합계         | 16   | 100%  | 37   | 100%  | 13 | 100%  | 32   | 100%  |

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체포’의 경우에 현행법으로서 단속 후 단순 초동 조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조사 이후 수사, 예심 등을 진행할 때 ‘억류’처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이후 후속 질문의 응답을 살펴보면, 조사 시설의 경우, 보위부나 수사관실, 비사그루빠 단속 후 안전부로의 이관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조사 시기의 경우에도 최대 1년

까지의 기간을 응답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 (1) 법적 절차 이행 1 – 체포 사유 및 권리 고지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 제3장에서는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sup>21</sup> 그 중 제42조 및 제 43조는 다음과 같다. 또한 제47조에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억류’가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제42조**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할 경우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단속 이유를 알려 준 다음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43조** 인민보안원은 단속한 자의 신분이나 법질서를 어긴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속된 자와 증인에게 다른 장소나 인민보안기관, 또는 자기 사무실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속된 자와 증인은 인민보안원의 요구에 응하며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된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47조**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기로 도주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겼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방랑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억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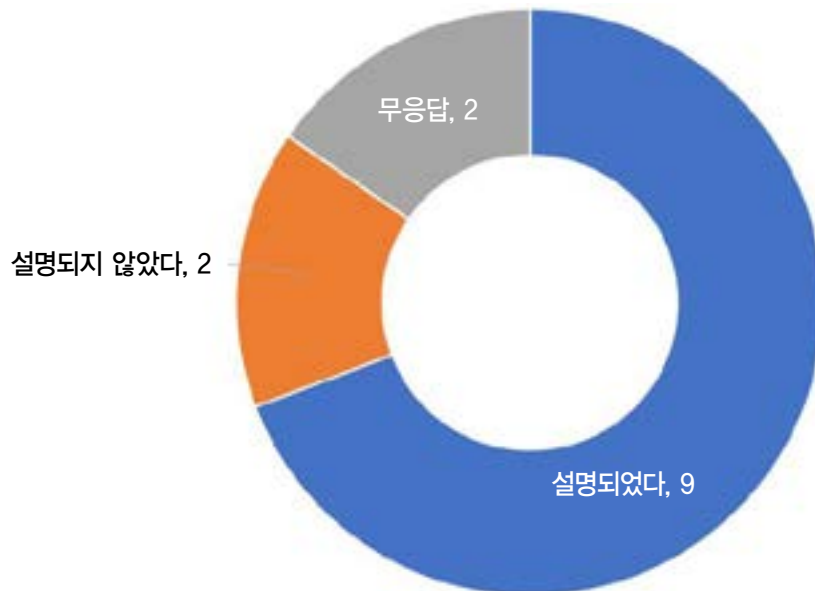
또한 북한의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구속 처분은 ‘형사추궁책임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제174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할 수 없다.(제173조) 이때의 체포, 구류 구속 처분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178조** (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범죄혐의자를 구류구속처분하러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21 다만 본 법은 ‘제7조 이 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어긴 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강도 높은 법적 처벌이 적시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법의 내용이 엄연히 자유권을 제약하는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북한에서 반민족반국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역시 적법한 법적 절차 준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체포단계에서의 적법한 법적 절차 준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체포된 경험이 있는 13명 중 체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림11]에는 9명이 설명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체포나 수색에 대한 문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모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1] 체포에 대한 설명 유무 (경험)



60건의 체포 목격 사례에서도 체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46건의 대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체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14건에 해당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보면 설명이 있었다는 내용도 대부분 어떤 죄목으로 체포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을 뿐, 단속 대상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체포나 수색에 대한 문서가 제시되었냐는 질문에는 단 6건이 제시받았고, 나머지 중 44건의 대상에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무응답이 10건이다. 체포에 대한 설명 및 문서에 대한 내용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up>22</sup>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단속대상자에게 단속 또는 체포와 관련된 문서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일부는 단속 과정에서 현행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체포령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현행범으로의 단속이 강화되고, 빈번하고 무분별한 단속 권한이 임시 조직에 부여된 상황에서, ‘체포령장’, ‘수색령장’

<sup>22</sup>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결과에서도, 수사 기관으로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34명) 중 수사원으로부터 체포될 당시 체포 또는 구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은 23명에 달하였고, 이들 중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검사의 승인서 등)를 제시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2020 북한인권백서』, p.60.

등의 최소한의 법적 절차 요건은 쉽게 무시될 가능성을 제기한다.<sup>23</sup>

재직자 중 보위부 소속 기관원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확보하고 메모리를 회수한 다음 제일 책임 있는 사람만 체포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보위부로 오도록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의 단속 권한을 보위부가 보유한 사실은 반민족반국가범죄로서의 요소를 갖출 경우, 법적 절차는 완전히 무시되게 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2) 법적 절차 이행 2 – 체포 사실 통지 여부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에서는 억류 사실에 대해 가족에게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49조** 법질서를 어긴 자를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억류된 자의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의 사무소에도 알린다.

형사소송법 에서도 체포나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 추후 진행될 예심과정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면회 등 면식품을 받을 기회나 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제179조(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과 소속단체,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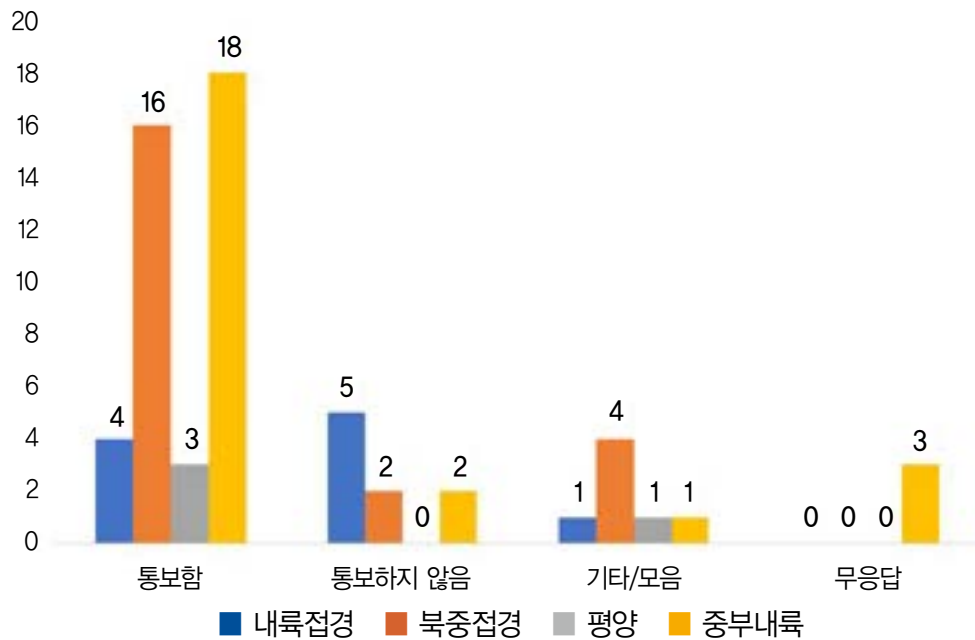
본인의 체포 사실이 가족들에게 통보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그림 13]에 8명은 통보가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만 가족들이 뇌물을 주고 알아냈다고 응답하였다. 기타로는 집에서 잡혔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알았다고 응답하였다. 경험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집에서 체포된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가 많아 응답자들이 통보가 된 것으로 응답을 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에게 고지되지 않은 체포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조사가 마무리되고 풀려난 사례였다.

목격자들의 경우에도 60건 중 41건의 사건에서 체포 대상자 가족에게 체포 사실이 고지되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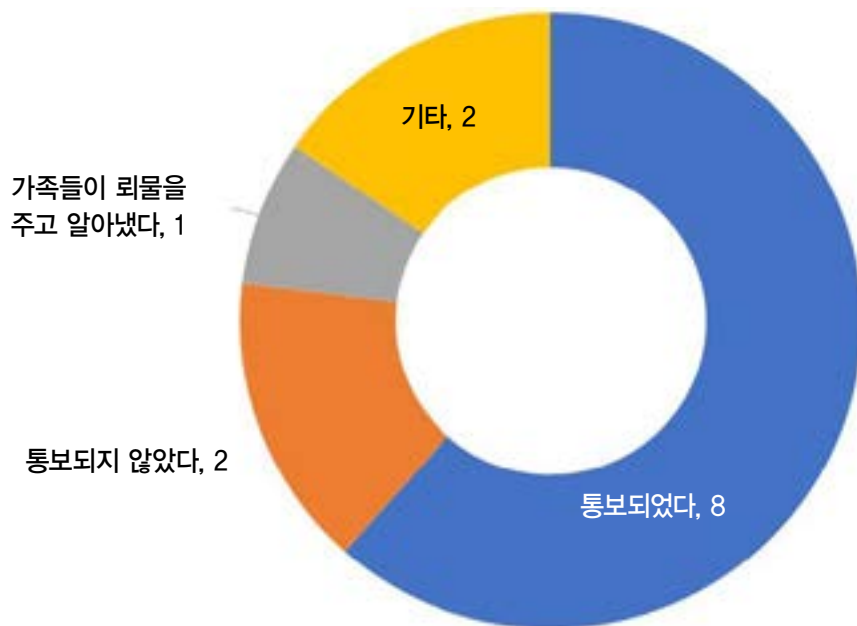
<sup>23</sup>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구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필요한 체포와 구금이 모두 수사기관인 검사의 자체적인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며, 기타로는 집에서 체포되어 자연히 알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평양 지역에는 고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0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통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12]

[그림 12] 지역에 따른 가족 고지 여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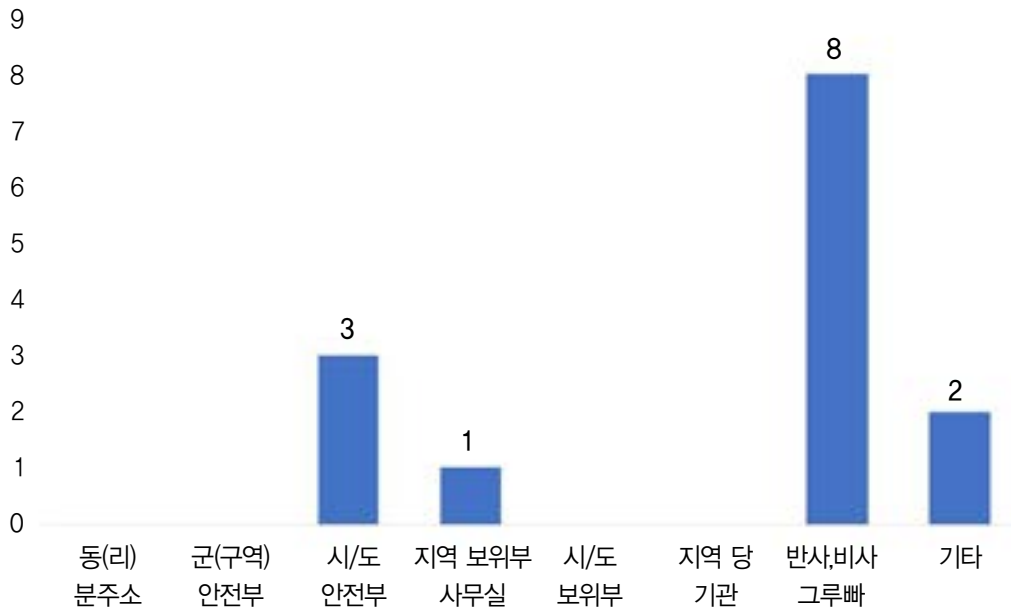
[그림 13] 체포 사실 통지 여부 (경험)



체포 이후 어디에서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림14]에는 단속을 진행한 곳에서 주로 조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따라서 반사. 비사 그루빠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거나 청년동맹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2024-S-9)<sup>24</sup>

[그림 14] 체포 후 조사 시설 (경험,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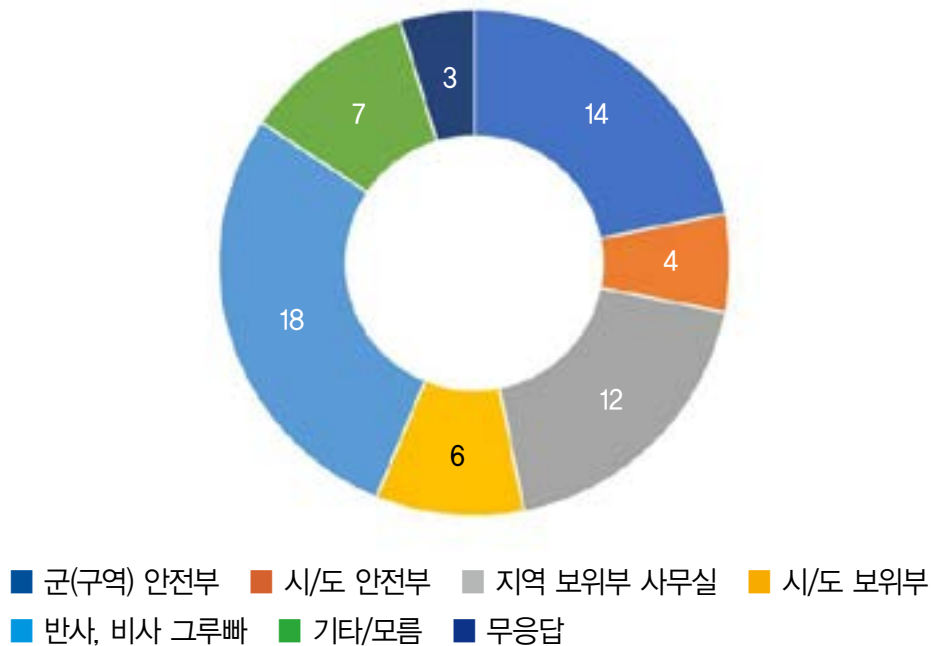


목격한 60건의 체포 사례를 보면, 조사 기관은 반사, 비사 그루빠가 18건으로 제일 많았고, 군(구역) 안전부가 14건, 지역 보위부 사무실이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내륙접경지역과 평양은 군(구역) 안전부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북중접경지역과 중부내륙지역은 반사, 비사그루빠 사무실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기타 장소로는 검찰소, 군 보위부 등이 있었다.

재직자들의 응답에서 단속대상자들이 어디에서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림 15]에는 대부분 안전부, 수사관실 등 법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2건은 처음에는 반사, 비사 그루빠에서 조사를 하고 이후 안전부에 넘겼다고 응답하였다.(2024-심층-2, 2024-심층-5)

<sup>24</sup> 인민보안단속법 제55조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거주지나 직장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에 넘겨주거나 교양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서와 증거물 같은 것을 함께 넘긴다. 단속한 군인은 조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 넘긴다.

[그림 15] 체포 후 조사 시설 (목적, 복수응답)



### (3) 법적 절차 이행 3 - 체포 후 조사 및 예심기간 준수

인민보안단속법에서는 억류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50조** 법질서를 어긴 자의 억류기간은 인민보안소는 3일, 시(구역), 군인민보안서는 10일까지이다. 료전기제는 시(구역), 군인민보안서가 10일까지 억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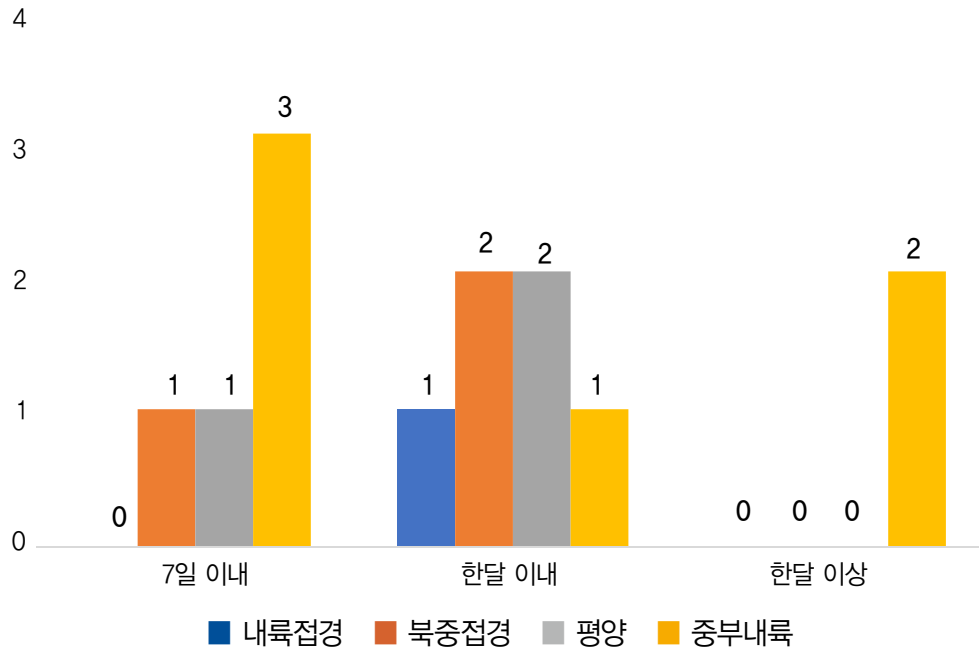
형사사건에서는 수사를 형사사건의 취급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바, 우리 법과 유사하게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금결정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174조에서는 수사원과 예심원 모두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내리거나, 석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74조(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우리의 조사 결과 체포된 13명의 경우 조사기간으로는 7일 이내가 5명, 한 달 이내가 6건이다.[그림 16] 지역별로는 북중점경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체포된 경우가 내륙점경 또는 중부내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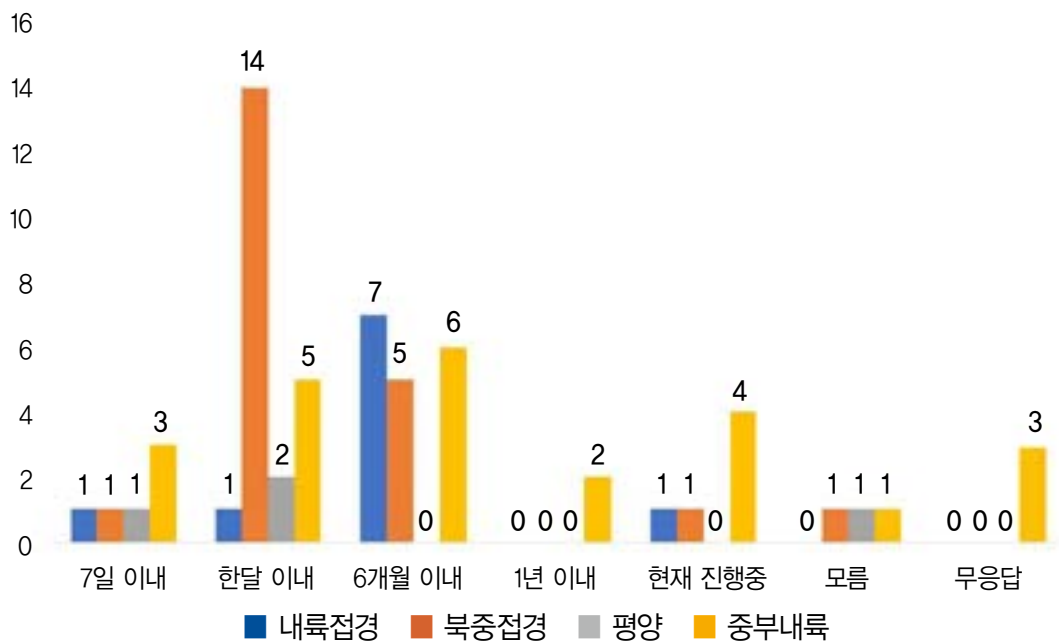
지역에서 체포된 경우보다 조금 더 오래 조사를 받은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 내륙 지역에서 한 달 이상이 소요된 경우가 2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 지역별 조사 소요 기간 (경험)



60 건의 체포 사건 목격자들의 응답에서는 단속되어 체포된 대상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7일 이내가 6건, 한 달 이내가 22건, 6개월 이내가 18건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내도 2건이나 있었다. [그림17] 중부내륙 지역의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도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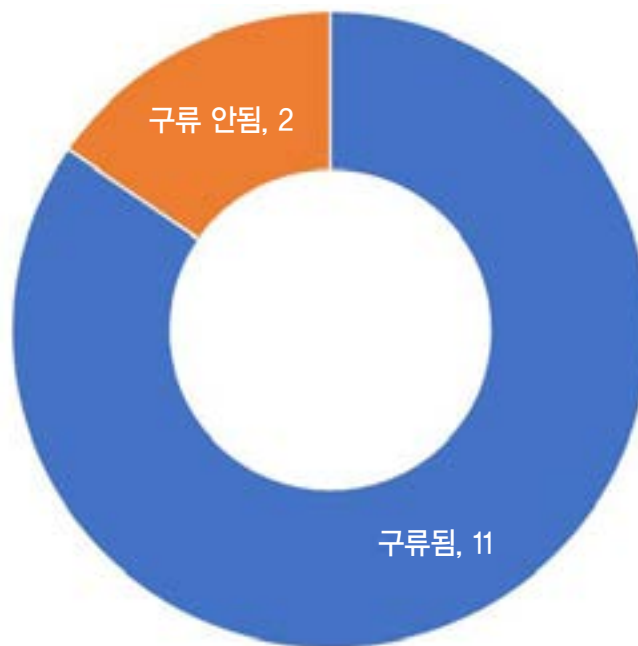
[그림 17] 지역별 조사 소요 기간 (목격,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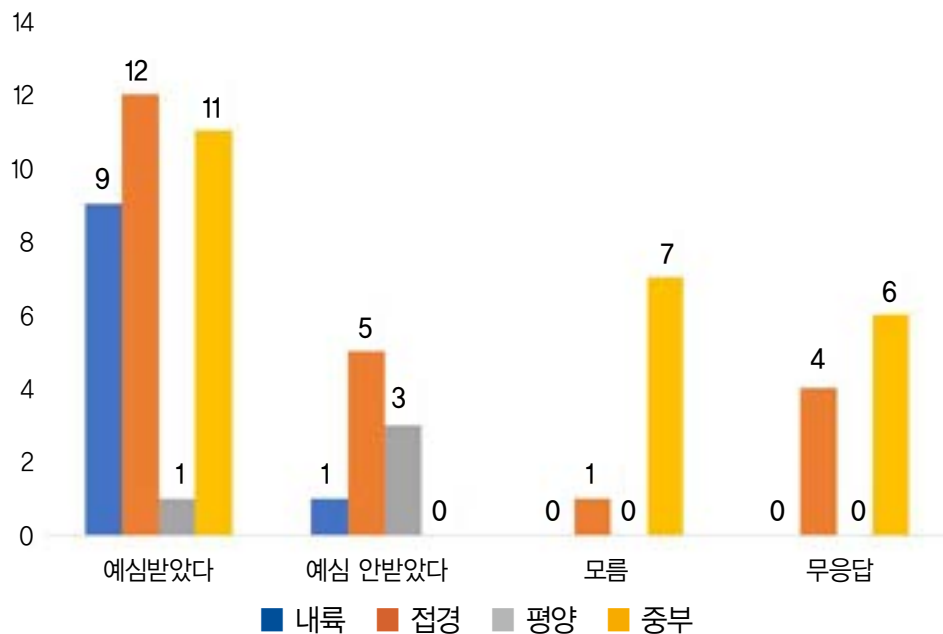
8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직자들의 응답에서도 실제 조사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6개월로 사례마다 경중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13명 중 11명이 구류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그림18] 단속 정황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구류 여부는 주로 단속 당시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체포 후 구류 여부(경험)



[그림 19] 지역별 예심 여부(목적,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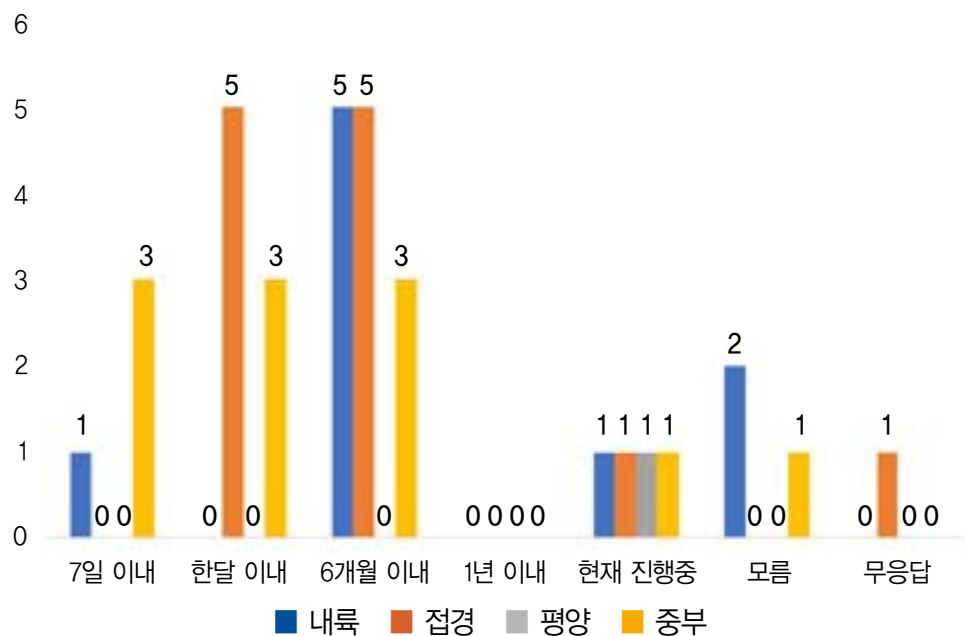


목격한 체포 사건 전체 60건 중 예심을 받은 대상은 33건으로 지역적으로는 내륙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평양은 유일하게 예심을 받지 않은 건수가 예심을 받은 건수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19]

형사소송법 제183조<sup>25</sup>에는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 예심에 10일 기한을 정해둬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예심은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하며, 형사소송법 148조<sup>26</sup>에 따라 단련형의 경우 4개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경우에도 예심을 5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다.

우리의 조사 결과 목격된 사건의 예심기간은 한 달 이내에서 6개월 이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0] 지역에 따른 예심 기간 (목격)



## 25 형사소송법 제183조 (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수 없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수 없다.

검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수 없다.

## 26 형사소송법 제148조 (예심기간의 연장)

이 법 제147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4조 1, 2항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 그밖의 로동교화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까지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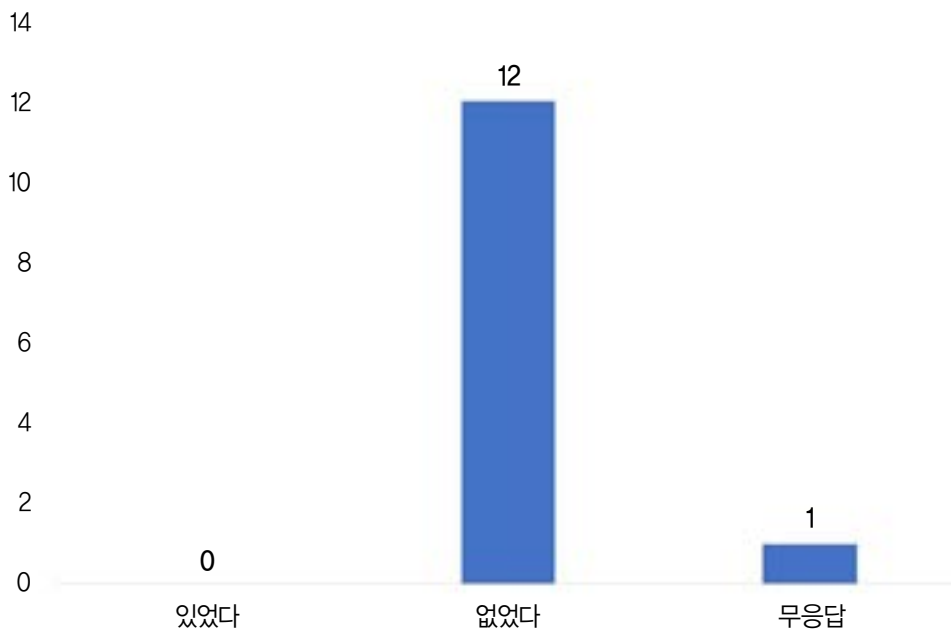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47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내륙지역은 6개월 이내가 제일 많은 반면, 접경 지역과 중부 지역은 한 달 이내에서 6개월 이내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20] 우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추궁 단계로 들어가는 ‘예심’과정에서도 4개월 기한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못했다. 다만, 장기적인 조사 과정을 포함하여 고려하면, 현재 북한의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집행하는 사법체계 상에서 사법기관들은 명백히 위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 (4) 법적 절차 이행 4 – 변호사의 조력 여부

체포 된 후 조사과정에서 법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2명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1명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림 21]

[그림 21] 조사 과정에서 법적 도움 제공에 대한 설명 여부 (경험)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165조<sup>27</sup>와 제166조<sup>28</sup>에 따르면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자의 권리(제166조)에는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6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북

**27 형사소송법 165조**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준다.

**28 형사소송법 166조** 예심에서 가지는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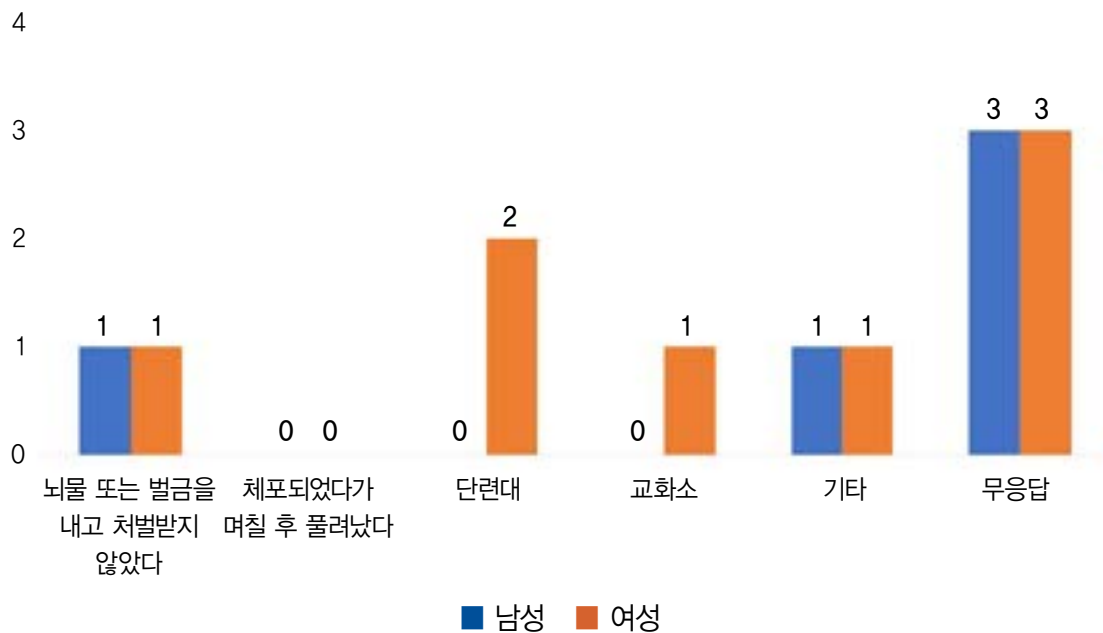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수 있다.
4.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5.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사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변호사법 제9조 제1호<sup>29</sup>에서도 변호사가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된 후 예심이 아닌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나 법적인 방조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 예심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법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북한의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사 이후 예심을 받은 응답자는 1명으로 20대 중부내륙의 남성이었다. 예심은 구류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조사 인원은 1명이었으며, 예심 과정에서 본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체포 경험자 13명 중 단련대에 간 비율은 각각 2명(15.4%), 교화소가 1명(7.7%)였으며, 6명의 응답자가 최종 처벌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림 22] 성별에 따른 최종 처벌 수준 (경험)



29 변호사법 제 9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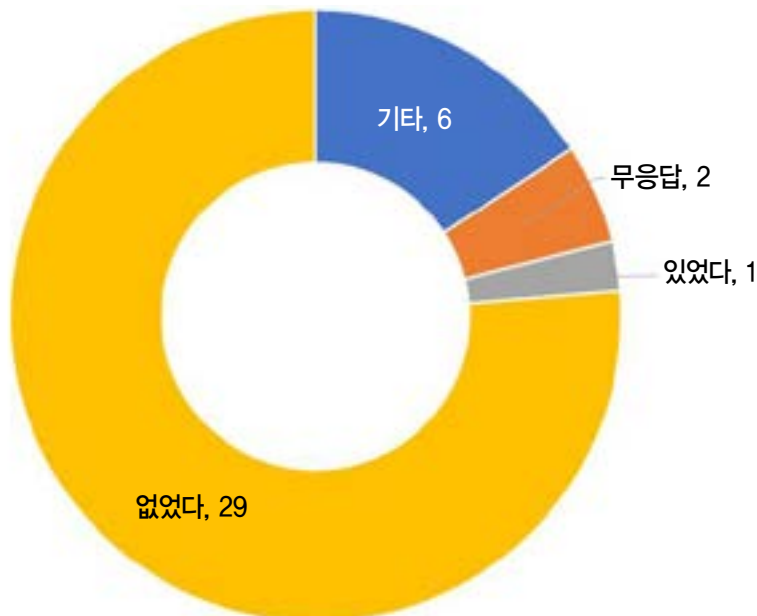
1. 형사사건기록을 볼 수 있으며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를 할 수 있다.
2. 증인, 감정인과 담화할 수 있다.
3. 변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하며 증거를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 앞서 재판소에 증거를 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변호에 필요한 증거문서, 증거물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검사 또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6. 말은 사건의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를 심리하는 제2심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처벌의 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이는 앞서 단속과 체포의 상황에서도 발견되었 듯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장사와 같은 부업을 하면서 외부매체를 접할 기회가 더 많고, 장사를 통해 외부매체가 든 메모리를 판매하면서 단속된 경우 유포죄로 단순히 외부매체를 소비한 것보다는 죄의 경중이 더 무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체포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명 중 최종 처벌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고 증언한 사람은 한 명으로 50대 여성이었으며 재판을 받은 장소는 ‘인민재판소’이고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특기 할 만한 사실은 당시 변호인이 법적 보호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소를 하면 더 큰 죄를 받을 것이라고 오히려 상소를 막았다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의 역할과 주민들을 위한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단속을 경험한 38명에게 최종 처벌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보호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냐는 질문에 29명(76.3%)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1명(2.6%)이었다. [그림 23] 없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는 형제 또는 가족 중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부가 설명을 덧붙인 응답자들이 있었다.

[그림 23] 보호 조치 가능 여부 (경험)



북한 형사소송법 제 354조에 의하면 제1심 판결 및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단속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 중 판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상소를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는 것은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단속된 대상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교화형이 34건이었으며, 20건이 단련대로 제일 높았고, 뇌물을 내고 처벌받지 않았거나 또는 벌금을 냈다는 사례도 21건이 있었다. [표 10] 공개처형과 같은 처벌에 대한 응답은 없었지만, 처벌 수준은 모르겠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응답도 7건이나 되었고, 관리소에 갔다는 응답도 1건이 있었다. 기타 처벌로는 군인의 경우 강제 제대, 가족들이 함께 추방 그리고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사례들이 있었다.

[표 10] 지역에 따른 최종 처벌 (목적, 복수응답)

|                          | 내륙접경 | 비율    | 북중접경 | 비율    | 평양 | 비율    | 중부내륙 | 비율    |
|--------------------------|------|-------|------|-------|----|-------|------|-------|
| 뇌물을 내고 처벌받지 않았거나 벌금을 냈다. | 2    | 14.3% | 7    | 20.6% | 3  | 27.3% | 9    | 23.1% |
| 체포되었다가 며칠 후 풀려났다         | 0    | 0.0%  | 3    | 8.8%  | 1  | 9.1%  | 0    | 0.0%  |
| 단련대                      | 2    | 14.3% | 7    | 20.6% | 5  | 45.4% | 6    | 15.4% |
| 교화소                      | 7    | 50.0% | 11   | 32.4% | 0  | 0.0%  | 16   | 41.0% |
| 관리소                      | 0    | 0.0%  | 1    | 2.9%  | 0  | 0.0%  | 0    | 0.0%  |
| 처벌수준은 모르겠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 2    | 14.3% | 2    | 5.9%  | 0  | 0.0%  | 3    | 7.7%  |
| 공개처형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기타                       | 1    | 7.1%  | 3    | 8.8%  | 2  | 18.2% | 4    | 10.2% |
| 무응답                      | 0    | 0.0%  | 0    | 0.0%  | 0  | 0.0%  | 1    | 2.6%  |
| 합계                       | 14   | 100%  | 34   | 100%  | 11 | 100%  | 39   | 100%  |

처벌 사유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컴퓨터 및 저장기기를 이용한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표11]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16조(컴퓨터, 기억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특징을 보면 평양지역의 경우에는 손전화기를 통한 반동사상문화 시청 및 류포도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내륙과 중부지역은 한국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호가 잡히는 지역이 있어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한 반동사상문화 시청 및 류포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접경지역은 국경이 가깝다는 특징에 따라 국경을 통한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장에서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경로에 따라 국경을 통한 류입 차단(제9조), 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 차단(제10조), 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 차단(제11조), 전파·인터넷

네트를 통한 류입 차단(제12조), 적지물을 통한 류입 차단(제13조)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 11】 지역에 따른 단속 적용 법령 (목적, 복수응답)

|                                | 내륙접경 | 비율    | 북중접경 | 비율    | 평양 | 비율    | 중부내륙 | 비율    |
|--------------------------------|------|-------|------|-------|----|-------|------|-------|
| 국경을 통한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          | 2    | 8.3%  | 10   | 20.4% | 0  | 0.0%  | 6    | 11.1% |
| 대외사업공간에서의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       | 1    | 4.2%  | 3    | 6.1%  | 0  | 0.0%  | 1    | 1.9%  |
|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한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   | 2    | 8.3%  | 0    | 0.0%  | 0  | 0.0%  | 4    | 7.4%  |
| 복사기, 인쇄기를 이용한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   | 3    | 12.5% | 1    | 2.0%  | 1  | 6.2%  | 3    | 5.5%  |
| 컴퓨터 및 저장기기를 이용한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 | 1    | 4.2%  | 15   | 30.6% | 6  | 37.5% | 12   | 22.2% |
|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한 반동사상문화 시청 및 류포   | 7    | 29.2% | 4    | 8.2%  | 0  | 0.0%  | 10   | 18.5% |
| 손전화기를 통한 반동사상문화 시청 및 류포        | 4    | 16.7% | 3    | 6.1%  | 5  | 31.2% | 6    | 11.1% |
| 성녹화물 시청 및 미신 류포                | 0    | 0.0%  | 3    | 6.1%  | 0  | 0.0%  | 1    | 1.9%  |
| 괴뢰말과 글, 창법 사용                  | 2    | 8.3%  | 7    | 14.3% | 3  | 18.8% | 6    | 11.1% |
| 적지물, 습득물 미보고 및 보관, 시청, 류포      | 2    | 8.3%  | 0    | 0.0%  | 0  | 0.0%  | 1    | 1.9%  |
| 부모의 가정교양 부족                    | 0    | 0.0%  | 1    | 2.0%  | 1  | 6.3%  | 1    | 1.9%  |
| 기타                             | 0    | 0.0%  | 2    | 4.1%  | 0  | 0.0%  | 3    | 5.5%  |
| 합계                             | 24   | 100%  | 49   | 99.9% | 16 | 100%  | 54   | 100%  |

최종 처벌에 대한 재판을 받은 사례는 32건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평양지역은 재판을 받았다는 사례가 없다는 특징이 있었다. [표12] 평양 응답자들의 경우 교화형을 받은 경우가 없고 단련형에 그쳐, 재판 과정을 목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화형을 언도 받을 시, 지방으로의 추방이나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므로, 뇌물을 통해 교화형을 피하기 위한 의지가 매우 결과로 분석된다. 재판 장소는 공식적인 재판소보다는 경기장, 야외공원, 광장 등 공개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 대중에게 처벌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재직자들에 의한 단속 사례에 대한 증언 중에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나올 당시 특별 단속을 진행할 때 모두 다 조심하고 있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미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단속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 출신 성분 등 여러 조건들을 따져 시범검으로 공개 총살을 한 적이 있었다는 증언(2024-심층-2)이 있었는데 이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임의적인 적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이는 완전히 인민들에게 공개된 형식이 아닌, 일부만이 총살을 목격한 특수한 형태로 판단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에서 확보된 사례는 1건을 제외한 7건의 경우 함께 한국드라마를 보거나, 메모리를 판매하는 등 다소 죄가 무거운 사례들이었다. 이에 따라 최종 처벌도 교화소 5년부터 공개처형까지 무거운 처벌이 가해졌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령이 포함되고, 이들을 엄격히 단속하는 상황에서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같이 한국영화, 음악을 본 사례 역시 학생들에게 교화 13년, 7년 등이 선고되는 등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지역에 따른 재판 유무 (목격, 복수응답)

|           | 내륙접경 | 비율    | 북중접경 | 비율    | 평양 | 비율    | 중부내륙 | 비율    |
|-----------|------|-------|------|-------|----|-------|------|-------|
| 재판받음      | 8    | 80.0% | 9    | 42.8% | 0  | 0.0%  | 15   | 62.5% |
| 재판안받음     | 1    | 10.0% | 6    | 28.6% | 3  | 75.0% | 3    | 12.5% |
| 기타/모름     | 0    | 0.0%  | 3    | 14.3% | 0  | 0.0%  | 2    | 8.3%  |
| 현재 조사 진행중 | 1    | 10.0% | 2    | 9.5%  | 0  | 0.0%  | 0    | 0.0%  |
| 무응답       | 0    | 0.0%  | 1    | 4.8%  | 1  | 25.0% | 4    | 16.7% |
| 합계        | 10   | 100%  | 21   | 100%  | 4  | 100%  | 24   | 100%  |

재판 당시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10건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었다는 등의 설명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보면 변호인의 역할은 일반적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피심자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보다는 재판이라는 형식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오히려 변호사가 “항소(상소)를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는 증언(2024-PY-1)도 있었다. 재판은 보통 검사의 사건 설명으로 시작되고 이에 대해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소 판사가 선고하고 종결된다는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공개재판에서는 변호사의 변호 없이 죄목을 낭독하고 검사와 판사가 판결을 언도하여 구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의 조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다음 질문의 답변에서도 볼 수 있다. 체포된 사람들이 최종 처벌을 받기 까지 스스로 보호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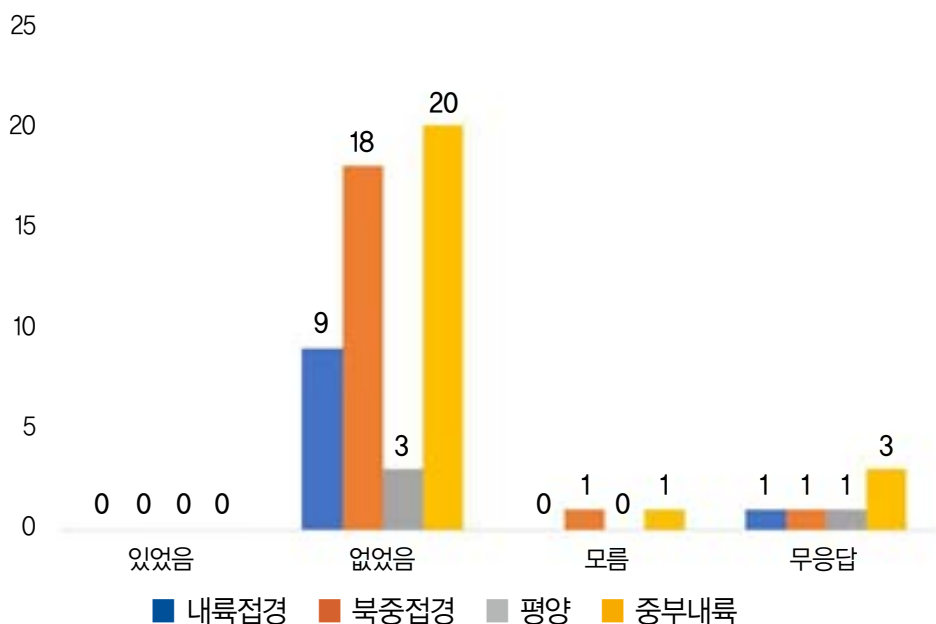
[표 13] 지역에 따른 재판 변호인 조력 여부 (목적)

|     | 내륙접경 | 비율    | 북중접경 | 비율    | 평양 | 비율 | 중부내륙 | 비율    |
|-----|------|-------|------|-------|----|----|------|-------|
| 있었다 | 1    | 12.5% | 4    | 44.4% | 0  | -  | 5    | 33.3% |
| 없었다 | 5    | 62.5% | 2    | 22.2% | 0  | -  | 7    | 46.7% |
| 모름  | 0    | 0.0%  | 2    | 22.2% | 0  | -  | 0    | 0.0%  |
| 무응답 | 2    | 25.0% | 1    | 11.1% | 0  | -  | 3    | 20.0% |
| 합계  | 8    | 100%  | 9    | 100%  | 0  | -  | 15   | 100%  |

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가 없었다고 응답하여 사실상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에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만으로 앞의 질문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24]<sup>30</sup>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에서 조사기간 동안 피심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들 모두 피심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165조와 166조에 의해 피심자의 권리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자의 권리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을 알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채 조사에 임하고 있어, 조사에 처하는 당

[그림 24] 지역에 따른 보호 조치 가능 여부 (목적)



30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장은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차단에 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유포하는 것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한다.

사자와 법 집행자들 모두가 법적 절차 상 피심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일련의 보호 조치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 처벌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심층면담 응답자들은 범죄의 내용(3명)과 단속 당시 방침의 존재 여부(2명)을 가장 많이 골랐으며, 이외에도 처벌수준을 결정하는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단속된 자의 성분 또는 경제적 수준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단속된 사람의 처벌이 법에 명시된 양형기준과 똑같이 적용되냐는 질문에는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고 답변하였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똑같은 범죄라도 단속된 사람의 출신성분, 경제수준, 가정환경,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뇌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답변으로 보았을 때 법의 조항보다는 단속된 사람의 환경이 처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2014년 발표된 COI 보고서를 통해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19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는데, 이 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바 있다.

[표 14] 처벌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목적, 복수응답)

|                         | 내륙접경 | 비율    | 북중접경 | 비율    | 평양 | 비율    | 중부내륙 | 비율    |
|-------------------------|------|-------|------|-------|----|-------|------|-------|
| 범죄의 내용                  | 8    | 42.1% | 26   | 37.1% | 10 | 50.0% | 12   | 24.5% |
|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사람의 영향력     | 2    | 10.5% | 11   | 15.7% | 3  | 15.0% | 10   | 20.4% |
| 단속 당시 방침의 존재 여부         | 5    | 26.3% | 20   | 28.6% | 5  | 25.0% | 14   | 28.6% |
| 단속된 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수준 | 4    | 21.1% | 8    | 11.4% | 2  | 10.0% | 10   | 20.4% |
| 사건의 범위                  | 0    | 0.0%  | 5    | 7.2%  | 0  | 0.0%  | 3    | 6.1%  |
| 합계                      | 19   | 100%  | 70   | 100%  | 20 | 100%  | 49   | 100%  |

이는 일반 주민들의 인식과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반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 처벌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범죄의 내용과 사건의 범위가 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속 당시 방침의 존재여부가 3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성별,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로 보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중부지역은 모두 고르게 선택했다는 특징이 있다.

## 6

## 북한 주민들의 위기 - 법 인식 미비

주민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법 조항의 처벌 수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7%, ‘위반사례를 알고 있다’는 비율이 20.7%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 반면에 ‘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체포 및 조사, 예심, 재판 단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수준에 머물러 법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절차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답변의 비율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는 크게 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표 15] 법 조항에 대한 인지 여부 [복수응답]

|                                     | 응답자 | 비율    |
|-------------------------------------|-----|-------|
| 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 20  | 14.3% |
| 법 조항의 처벌 수준에 대해 알고 있다               | 64  | 45.7% |
| 위반 사례를 알고 있다                        | 29  | 20.7% |
| 체포 및 조사, 예심, 재판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 17  | 12.1% |
| 기타                                  | 10  | 7.2%  |
| 합계                                  | 140 | 100%  |

이는 대부분의 강연회의 교육 내용이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사례를 중심으로 법을 어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교육이 공포심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적용되는 방법은 매우 임의적이고 처벌의 기준과 집행도 법의 기준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북한 주민들의 위기는 1차적으로 법의 임의적 적용에서 시작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작게는 옷 스타일과 입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매체를 소비하는 일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행동이 합법이고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처벌을 받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더라도 공포정치 상황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던 북한 주민들에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또 다른 삶의 제약이며, 더 나아가 법이 임의적으로 적

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주민들의 혼란스러운 인식은 다음의 질문에서 잘 나타난다. 본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인해 단속이 될 경우 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표 16, 17]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각 답변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두 개의 답을 함께 고르거나 일부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선택하는 등 주민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표 16] 조사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

|                            | 응답자 | 비율    |
|----------------------------|-----|-------|
| 조사를 받는 장소부터 과정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 35  | 33.7% |
| 조사를 받는 장소는 알지만 과정은 알지 못한다  | 49  | 47.2% |
| 조사를 받는 장소는 모르지만 과정을 알고 있다  | 10  | 9.6%  |
| 잘 모르겠다                     | 8   | 7.7%  |
| 기타                         | 1   | 0.9%  |
| 무응답                        | 1   | 0.9%  |
| 합계                         | 104 | 100%  |

[표 17] 재판 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

|                                | 응답자 | 비율    |
|--------------------------------|-----|-------|
|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부터 과정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 28  | 28.0% |
|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는 알고 있지만 과정을 알지 못한다 | 33  | 33.0% |
|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는 모르지만 과정을 알고 있다    | 12  | 12.0% |
| 잘 모르겠다                         | 27  | 27.0% |
| 합계                             | 100 | 100%  |

법에 대해 주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집행되는 법이 북한 주민들의 위기의 1차적인 요인이라면 이를 심화시키는 것은 단속된 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구제 시스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본 설문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신소(청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 비율이 35%이며, 법적으로 보장되는지도 모르고 신소방법도 모른다는 응답이 29%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로 20대에서는 신소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주로 적용되는 청년층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표 18] 연령별 신소 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

|                                         | 20대 | 비율    | 30대 | 비율    | 40대 | 비율    | 50대 | 비율    | 60대 | 비율    |
|-----------------------------------------|-----|-------|-----|-------|-----|-------|-----|-------|-----|-------|
| 신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신소 방법도 알고 있다 | 3   | 13.1% | 11  | 39.3% | 13  | 46.4% | 7   | 38.9% | 1   | 33.3% |
| 신소방법을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몰랐다          | 5   | 21.7% | 11  | 39.3% | 9   | 32.1% | 9   | 50.0% | 1   | 33.3% |
|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모르고, 신소방법도 모른다               | 15  | 65.2% | 6   | 21.4% | 5   | 17.9% | 2   | 11.1% | 1   | 33.3% |
| 무응답                                     | 0   | 0.0%  | 0   | 0.0%  | 1   | 3.6%  | 0   | 0.0%  | 0   | 0.0%  |
| 합계                                      | 23  | 100%  | 28  | 100%  | 28  | 100%  | 18  | 100%  | 3   | 99.9% |

이와 더불어 재직자들의 인식 또한 북한 주민들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직자들은 단속된 북한 주민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명시한 가장 강력한 처벌인 사형과 공개처형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심층면담의 응답자 5명 중 4명이 단속 당시 방침이 존재한 경우를 꼽았다. 이는 법령에 제정된 내용이 아닌 북한 정권에서 처벌이 강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임의적인 결정에 의해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침해된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

이처럼 임의적인 법 집행,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법 집행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결합하여 북한주민들을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7

## 제언

북한의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은 제정 이후, 단속 기관의 강화, 단속 빈도의 증대, 단속 장소의 확장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은 해당 법 조문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기회가 부재하고, 국가의 하향식 사상 교육을 통해 법적 처벌 강화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고, 청소년 가족 등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지울 것을 강요 받고 있다. 가족 단위의 통제구조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상과 언어, 나아가 문화 접촉의 기회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법치주의는 분명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단속 권한을 가진 자들은 정식 법 기관 소속 성원이 아닐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단속 절차 상의 주민 인권 침해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법 기관 소속 성원 또한 단속 기회 증대 등 방침 직후의 고강도 단속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에 임의적인 법집행을 일삼거나, 뇌물 등 착취를 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주민들은 법에 대해, 특히 ‘인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알지 못한 채 전방위적인 단속과 법적 처벌 위협 아래 놓인 것이다.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장악하는 것은 북한이 항상 사용하던 전략이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그러한 것이 법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전에도 말 반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시는 만연했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그러한 북한 정부의 전략이 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을 제정하면서 일상에 대한 감시를 넘어서 이러한 감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행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그 법 자체로 국제인권규범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제19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본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등의 적절한 문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체포된 사실에 대해 가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심자의 권리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예심기관도 북한 내 법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진행하는 등 기존의 북한의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변호사법 등

자국의 법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이 분명히 나타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집행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처벌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에서 명시된 양형기준에 정확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심자의 성분이나 경제상황, 인맥관계, 그리고 그 당시의 북한 정권의 단속에 대한 강도, 뇌물의 여부 등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임의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국제적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자국의 주민들의 외부매체 시청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단순히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의 권력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북한 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조항들 자체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법이 집행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국가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국제사회에서 정확히 전달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그 자체가 국가의 정당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북한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북한 법령

-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변호사법, 1993.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1992.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형법, 1990.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형사소송법, 2012.

### 단행본

-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통일연구원, 2023.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통일연구원, 2023.  
 대한변협, 『2022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22

### 학술 논문

- 황의정,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동북아법제연구』, 제12권 제3호, (2019년 1월), pp.109~139.

### 신문기사

- 김동하 기자, 조선일보, “북한, 세포비서대회 개막… 김정은 참석”, 2021년 4월 7일.  
 김채환 기자, Daily NK, “北 반사·비사연합지휘부, ‘82연합지휘부’로 변경…상설 조직 전환?”, 2021년 11월 5일.  
 배영경 기자, 연합뉴스, “북, ‘MZ세대 반사회주의’ 사상단속 법제화…가정교육까지 의무화”, 2022년 2월 5일.  
 배영경 기자, 연합뉴스, “김정은, 당 기층간부들에 ‘인민헌신’ 강조…”빠살 깎아서라도”(종합). 2022년 4월 1일  
 장슬기 기자, Daily NK, “[단독] “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적개심 노골화”, 2021년 1월 15일.  
 장슬기 기자, Daily NK, “‘서민갑부’ ‘골목식당’ 등 南예능 시청·유통한 고위간부 딸 공개총살”, 2022년 2월 25일.  
 은설 기자, Daily NK, “딸이 한국 영상물 봤다며 신고한 모친…주민들 ‘충격’”, 2024년 7월 31일.  
 정서영 기자, Daily NK,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근절 위한 여맹 ‘비밀규찰대’ 조직”, 2021년 7월 22일.  
 현혜란 기자, 연합뉴스, “북, ‘감시체계 말단’ 인민반장 우대법 제정…주민통제 강화 목적”, 2024년 4월 8일.

## 설문지

## 1장. 인적사항

1.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몇년생입니까?      (                      ) 년도
3.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함경북도   ② 함경남도   ③ 양강도   ④ 자강도   ⑤ 평안북도   ⑥ 평안남도   ⑦ 황해북도  
 ⑧ 황해남도   ⑨ 강원도   ⑩ 평양시   ⑪ 남포특별시   ⑫ 개성특별시   ⑬ 나선특별시
4. 공식적인 (국가로부터 배치된) 직장은 무엇입니까?  
 (1) 직업 (                      )  
 (예시: ① 무역/외화벌이   ② 보건의료(의사, 약사 등) ③ 교원(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 대학 등) ④ 연구사   ⑤ 사무원(행정기관 복무)   ⑥ 당기관복무   ⑦ 안전원/군인   ⑧ 공장/기업소 노동자   ⑨ 농업/어업 종사자   ⑩ 부양(주부)   ⑪ 학생   ⑫ 문화예술인   ⑬ 무직   ⑭ 연로보장자   ⑮ 기타(                      ))  
 (2) 직장명 (                      )  
 (3) 직급 (                      )
5. 공식 직장 외에 부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① 장사   ② 밀수무역(밀매 포함)   ③ 보건의료(의사, 약사 등)   ④ 가내수공업  
 ⑤ 가정교사(인민학교, 중학교, 대학 등, 문화예술인(악기), 퇴직교원)   ⑥ 연구사 부업  
 ⑦ 광산/공장/기업소/부업노동자(비공식적으로 기업소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⑧ 농업/어업 부업 종사자   ⑨ 기타 (                      )
6.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학교 다닌 적 없음   ② 소학교 중퇴   ③ 소학교 졸업   ④ 초급중학교 중퇴  
 ⑤ 초급중학교 졸업   ⑥ 고급중학교 중퇴   ⑦ 고급중학교 졸업  
 ⑧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중퇴   ⑨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졸업   ⑩ 대학 중퇴

⑪ 대학 졸업 ⑫ 박사원, 연구원 중퇴 ⑬ 박사원, 연구원 졸업 ⑭ 기타( )

7. 월 평균(한 달을 기준) 벌이는 얼마나 되나요?

- (1) 조선돈                      원  
(2) 미화                      달러  
(3) 중국 원화                  위안  
(4) 기타 ( )

2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정보

8.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8-1로 이동) ② 없다.(9로 이동)

8-1.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보았습니까?

( )

8-2. 당시 들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

8-3. 교육 대상 혹은 방침 전달 대상에 따라 전달 내용이 다른가요?

( )

9.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② 법 조항의 처벌 수준(사형, 교화형, 단련형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③ 위반 사례를 알고 있다.  
④ 체포 및 조사, 예심, 재판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⑤ 기타( )

3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단속 및 조사 실태

10.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에 남조선 및 외국 록화물 시청, 유포 등에 대한 단속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0-1. 법 제정 전과 후 단속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 )

10-2. 법 제정 전과 후에 단속하는 내용이 달랐습니까?

( )

11. 2020년 12월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단속을 당해보시거나 단속 과정을 목격 또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① 경험한 적도 있고, 목격하거나 들어본 적도 있다.(12로 이동)
- ② 경험한 적만 있다.(12로 이동)
- ③ 경험한 적은 없고 목격하거나 들어본 적 있다.(25로 이동)
- ④ 없다(4장으로 이동)

12. 가장 최근에 단속을 당한 경험은 언제입니까?(예시: 2024년 3월경)

( )

13. 당시 단속을 하러 온 기관 및 기관원은 몇 명이며 누구였습니까?

1. ( )명      2. ( ) 기관 소속

14. 단속을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역, 장소명, 길거리 등)

( )

15. 당시 단속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 ① 국정에서의 반동사상문화 유입 및 유포 단속
- ② 텔레비전 및 라디오, 컴퓨터 등 저장기기 불시검문
- ③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된 상부의 방침으로 인한 단속
- ④ 괴뢰말과 글, 창법 사용에 대한 단속
- ⑤ 기타 ( )

16. 단속을 당한 당시 정황을 설명해주세요.(단속 당시 단속원에 의한 신분 제시 등)

( )

17. 단속을 당한 이후 체포되었습니까?

- ① 체포되었다.(18로 이동)      ② 체포되지 않았다.(25로 이동)
- ③ 뇌물을 주고 무마했다.(25로 이동)

18. 체포가 되었다면, 체포 당시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는지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① 설명되었다. ② 설명되지 않았다.

(체포 사유: )

19. 체포 당시, 상부에서 체포나 수색하도록 지시하거나 허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받았습니까?

① 체포에 대한 허가 문서는 받았지만 수색에 대한 문서는 못받았다.

② 체포에 대한 허가 문서는 없었지만 수색에 대한 문서는 있었다.

③ 둘 다 받았다.

④ 둘 다 못 받았다.

20. 체포 이후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① 동(리) 분주소 ② 군(구역)안전부 ③ 시/도 안전부(국) ④ 지역 보위부 사무실

⑤ 시/도 보위부(국) ⑥ 지역 당 기관 ⑦ 반사, 비사 구루빠 ⑧ 기타( )

21. 체포 사실을 당국이 가족에게 통보했습니까?

① 통보되었다. ② 통보되지 않았다. ③ 가족들이 뉘몰을 주고 알아냈다. ④ 잘 모르겠다.

22. 당시 기관원/기관에 의해 조사를 거쳤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22-1. 몇 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까?

( )

22-2. 조사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 )

22-3. 구류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류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

22-4. 조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어떤 도움이었습니까?

( )

23. 조사 이후 예심단계를 거쳤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23-1. 몇 일 동안 예심을 받았습니까?

( )

23-2. 예심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 )

23-3. 구류된 상황에서 예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류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

23-4. 예심 과정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어떤 도움이었습니까?

( )

24. 최종 처벌 및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을 안다면 말씀해주세요.

( )

25. 최종 처벌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까?

① 받았다.(25-1로 이동) ② 받지 않았다.(26으로 이동)

25-1. 받았다면 재판을 받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25-2.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습니까?

25-3. 재판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26. 최종 처벌 및 처분에 이르기 까지 자신을 보호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 )

27. 다른 사람에 관해 밀고하거나 다른 사람을 감시해 당국에 신고하는 일을 하면 본인의 일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거나 약한 처벌을 하겠다고거나 풀어주겠다고 하는 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28.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제정 이후, 관련 부문 단속에 대해서 목격 또는 들어 본 경험은 몇 번 정도입니까?

① 1회 ② 2-5회 ③ 6-9회 ④ 10회 이상

29. 가장 최근 경험하거나 목격 또는 들어본 단속은 언제였습니까?(예시 : 2024년 3월)

30. 당시 단속을 진행한 기관 및 기관원은 몇 명이며 누구 였습니까?

1. ( )명      2. ( ) 기관 소속

31. 당시 단속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여러 명일 경우 사례별로 구분하여 대답)

(사례 1: )

(사례 2: )

32. 단속을 진행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역, 장소명, 길거리 등)

(사례 1: )

(사례 2: )

33. 당시 단속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복수응답)

(사례 1: )

(사례 2: )

- ① 국경에서의 반동사상문화 유입 및 유포 단속
- ② 텔레비존 및 라디오, 컴퓨터 등 저장기기 불시검문
- ③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된 상부의 방침으로 인한 단속
- ④ 괴뢰말과 글, 창법 사용에 대한 단속
- ⑤ 기타( )

34. 당시 단속된 대상은 체포되었습니까? (여러 명일 경우 사례별로 구분하여 대답)

- ① 체포되었다.(34-1로 이동)
- ② 체포되지 않았다.(36으로 이동)
- ③ 잘 모르겠다.(36으로 이동)

34-1. 단속된 자에게 체포 당시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는지 설명이 되었습니까?

(사례 1: )

(사례 2: )

34-2. 단속된 자에게 상부에서 체포나 수색하도록 지시하거나 허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가 제시되었습니까?

(사례 1: )

(사례 2: )

34-3. 체포 사실을 당국이 가족에게 고지했습니까(알려주었습니까)?

(사례 1: )

(사례 2: )

34-4. 단속된 자는 당시 기관원/기관에 의해 조사를 거쳤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사례 1: )

(사례 2: )

34-5. 단속된 자는 며칠동안 조사를 받았습니까?

(사례 1: )

(사례 2: )

35. 단속된 자는 조사 이후 예심단계를 거쳤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35-1. 몇 일 동안 예심을 받았습니까?

( )

35-2. 구류된 상황에서 예심을 받았습니까?

① 체포되었다.(34-1로 이동) ② 체포되지 않았다.(35로 이동)

36. 당시 단속된 대상은 어떤 처벌(몇년 형)을 받았습니까? 가장 높은 형량을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사례 1: )

(사례 2: )

① 뇌물 또는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았다.(뇌물금액: )

② 체포되었다가 며칠 후 풀려났다. ③ 단련대 (형량: ) ④ 교화소 (형량: )

⑤ 관리소 ⑥ 처벌 수준은 모르겠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⑦ 공개처형 ⑧ 기타( )

37. 당시 처벌에 적용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

(사례 1: )

(사례 2: )

① 국경을 통한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 (법조항 )

② 대외사업공간에서의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 (법조항 )

③ 텔레비, 라디오를 통한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 (법조항 )

④ 복사기, 인쇄기를 이용한 반동사상문화 류입 및 류포 (법조항 )

⑤ 컴퓨터 및 저장기기를 이용한 반동사상문화 시청 및 류포 (법조항 )

⑥ 텔레비, 라디오를 통한 반동사상문화 시청 및 류포 (법조항 )

⑦ 손전화기를 통한 반동사상문화 시청 및 류포 (법조항 )

⑧ 성녹화물 시청 및 미신 류포 (법조항 )

- ⑨ 괴뢰말과 글, 창법 사용 (법조항 )
- ⑩ 적지물, 습득물 미보고 및 보관, 시청, 류포 (법조항 )
- ⑪ 부모의 가정교양 부족 (법조항 )
- ⑫ 기타( )

38. 최종 처벌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까?

- ① 받았다.(38-1로 이동) ② 받지 않았다.(39으로 이동)

38-1. 받았다면 재판을 받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38-2.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습니까?

38-3. 재판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39. 최종 처벌 및 처분에 이르기 까지 단속된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 )

#### 4장. 법적 처벌 결정 과정

40.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또는 괴뢰문화로 체포된 경우 어떤 과정으로 조사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조사를 받는 장소부터 과정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 ② 조사를 받는 장소는 알지만 과정은 알지 못한다.
- ③ 조사를 받는 장소는 모르지만 과정은 알고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41. 재판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부터 과정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 ②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는 알고 있지만 과정은 알지 못한다.
- ③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는 모르지만 과정은 알고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4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또는 괴뢰문화로 인해 단속된 자의 처벌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범죄의 내용    ②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사람의 영향력    ③ 단속 당시 방침의 존재 여부
- ④ 단속된 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수준    ⑤ 사건의 범위(단속된 자의 수 등)
- ⑥ 기타(            )

43. 처벌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모두 선택)

- ① 처벌의 수준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고 있다.
- ② 누가(어떤기관이) 처벌을 결정하는 지 알고 있다.
- ③ 누가(어떤기관이) 처벌을 집행하는 지 알고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44. 신소(청원)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신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소방법도 알고 있다.
- ② 신소방법은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몰랐다.
- ③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모르고, 신소방법도 모른다.
- ④ 기타(            )

45. 마지막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의견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단속 및 처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의 위기

